# 시 보

| 선람 | 기관의 장 |
| --- | --- |
| | |

all ways INCHEON

제2045호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22년 7월 20일 수요일

## 고 시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2-41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2차) 승인 고시(영종 미단공동7BL) … 2

##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745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 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75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공고 ····· 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764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 5

##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77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6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78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66

## 기 타

○ 인천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공고 제2022-33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개방형직위(정책기획조정관) 공개모집 재공고 ····· 97

| 회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천광역시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고 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2-41호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2차) 승인 고시(영종 미단공동7BL)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2차)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7. 18.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의 명칭: 영종 미단시티 공동7블록 주택건설사업(변경없음)
2. 사업주체: 주식회사 퍼스트제일개발(변경)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128(중앙동 2가)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건설주택의 규모 (변경없음)
   가. 위 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1367-1(영종 미단공동7BL)
   나. 대지면적: 24,882.30㎡
   다. 연 면 적: 53,780.0834㎡
   라. 건설주택 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1층~지상34층, 3개동, 388세대
   -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6개동
   - 근린생활시설: 지상1층, 1개동
4. 사업시행기간: 2022. 9. ~ 2025. 10. 30.(변경)
5. 변경 내용: 사업주체, 사업기간, 사업비 변경
6.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사항
   가.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나. 도로법 제61조 도로점용허가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745호

#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등록사업자 | 대표자 | 등록 연월일 | 등록번호 | 자본금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비고 |
|---|---|---|---|---|---|---|
| 버스타건설 주식회사 | 박종화 | 2022. 7. 19. | 인천220012 | 300,000,000원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280, 505호 (청라동, 골든프라자) | |

2022년 7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754호

#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8일

## 인 천 광 역 시 장

○ 행정처분 사항

| 등록번호 | 상 호<br>(대표자) | 영업소 소재지 | 법령위반<br>내 용 | 행정처분<br>내 용 |
|---|---|---|---|---|
| 111475 | (주)엠엑스티<br>(MXT CO., LTD)<br>(김남원) | 인천광역시 부평구<br>부평북로 197<br>(청천동) | 정보통신기술자<br>등록기준 미달 | 영업정지 30일<br>( '22.7.19.~8.17.)<br>[2022.7.1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764호

#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9일

## 인 천 광 역 시 장

❑ 변경등록 사항 : 대표자 및 대표자 주소

○ 단체명 :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 등록번호 | 단체명 | 주된 사업 | 변경사항 | | 주관부서 |
|---|---|---|---|---|---|
| | |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2016-0-인천광역시-30호 | (사) 함께하는 인천사람들 | 서민 창업지원 및 긴급 생계자금 지원 | 대표자 : 오경환<br>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대표자 : 김하운<br>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일자리 경제과 |

입법예고

#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77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7월 20일

인천광역시장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반영하고 핵심공약을 중심으로 시민행복 구현을 위한 조직과 사무를 조정하여, 시정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업무성과를 창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변경함.(안 제3조)

나. 미운영 전문임기제 조항을 삭제함.(안 제3조)

다. 시장 보좌기관을 시정혁신담당관, 글로벌도시기획단,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으로 변경함.(안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조의4)

라. 행정부시장 보좌기관을 변경함.(안 제5조의5, 제5조의6 및 제5조의7)

- 대변인을 홍보담당관으로 변경하고 행정부시장을 보좌하도록 함.
- 소통기획담당관을 도시브랜드담당관으로 변경하고 행정부시장을 보좌하도록 함.
- 도시디자인단을 신설하고 행정부시장을 보좌하도록 함.

마. 개방형직위 지정사항을 변경함.(안 제5조의5, 제5조의6, 제5조의7 및 제6조의2)

- 도시브랜드담당관 및 도시디자인단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함.
- 대변인 및 협치인권담당관을 개방형 직위에서 해제함.

바. 문화복지정무부시장 보좌기관을 변경함.(안 제6조 및 제6조의3)

- 시민정책담당관을 시민소통담당관으로 변경함.
- 청년정책과를 청년정책담당관으로 변경하고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보좌하도록 함.

사. 실·국·본부장의 분장사무를 신설 및 조정함.(안 제8조, 제13조의4, 제14조 및 제16조의4)

- 경제산업본부: 노동정책 추가, 청년정책 이관(→청년정책담당관)
- 건강보건국: 체육진흥 이관(→ 문화체육관광국)

- 교통건설국: 물류사무 이관(→ 해양항공국)
- 도시계획국: 도시경관 이관(→ 도시디자인단)
- 도시재생녹지국: 재생콘텐츠 이관(→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 해양항공국: 물류정책업무 신설(← 교통건설국 택시물류과)
- 행정국: 민간협력 추가, 혁신업무 이관(→ 시정혁신담당관)

아. 부서를 신설 및 폐지함.(안 제4조의3, 제5조의7 및 제13조의4)

- 신설: 글로벌도시기획단, 도시디자인단, 물류정책과
- 폐지: 남북교류협력담당관, 도서관정책과

자. 부서 명칭을 변경함.(안 제4조의2, 제4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6,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7, 제7조, 제8조, 제13조 및 제14조)

- 혁신과 → 시정혁신담당관
- 재생콘텐츠과 →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 대변인 → 홍보담당관
- 소통기획담당관 → 도시브랜드담당관
- 시민정책담당관 → 시민소통담당관
- 청년정책과 → 청년정책담당관
- 평생교육담당관 → 교육협력담당관
- 국제협력담당관 → 국제평화협력담당관
- 재산관리담당관 → 공공시설혁신담당관
- 일자리경제과 → 경제정책과
- 미래산업과 → 전략산업과
- 노동정책담당관 → 노동정책과

- 택시물류과 → 택시정책과
- 협치인권담당관 → 민간협력과
- 청사건립추진단 → 청사시설과

##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원윤호(전화번호 032-440-2152, 팩스번호 032-440-8628, 전자메일 manyearsnow@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보좌기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시정혁신담당관, 글로벌도시기획단 및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을 두고, 행정부시장 밑에 감사관, 홍보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 및 도시디자인단을 두며, 문화복지정무부시장 밑에 시민소통담당관 및 청년정책담당관을 둔다.

제4조를 제5조의5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4조)의 제목 “(대변인)”을 “(홍보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대변인”을 “홍보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변인”을 “홍보담당관”으로, “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시정혁신담당관) ① 시정혁신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시정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1. 시정혁신 관련 정책 총괄·조정 및 발굴에 관한 사항
2. 시정혁신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
3. 혁신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4. 혁신 정책 협업지원에 관한 사항
5. 혁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6. 업무개선 사례 발굴, 도입 및 확산

7. 시민 제안에 관한 사항

8. 공무원 제안에 관한 사항

9.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10. 규제개혁(기업 등 지역현장) 과제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적극행정 계획 수립 및 추진 총괄

12.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사항

제4조의3(글로벌도시기획단) ① 글로벌도시기획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글로벌도시기획단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1. 뉴홍콩시티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뉴홍콩시티 조성을 위한 마중물사업 발굴 및 추진

3. 뉴홍콩시티 관련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뉴홍콩시티 조성 관련 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

제4조의4(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①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1. 제물포르네상스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물포르네상스 조성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5. 내항재개발 정책수립 및 기본구상에 관한 사항

6.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7.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8. 상상플랫폼 조성에 관한 사항

9.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10. 월미 해양복합문화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11. 배다리 우각로 근대문화길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12. 신포역 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에 관한 사항

13. 우회고가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14. 원도심특별회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7(도시디자인단) ① 도시디자인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디자인단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도시디자인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시장을 보좌한다.

1. 도시경관계획 수립

2. 자연, 수변, 시가지, 역사·문화, 도서, 교통·산업, 도로경관 및 야간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각종 경관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도시경관형성 및 발전을 위한 제도연구,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경관위원회 운영 및 지구단위계획 등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6. 각종 개발사업 경관 협의 및 평가, 그 밖에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

7. 도시개성창조사업에 관한 사항

8. 도시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경관·미관 등 용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0.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

11. 경관 관련 비영리단체 지원 및 지도감독

12.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작성

13. 각종 경관형성 관련 가이드라인 작성

14. 건축물 및 도시기반시설의 품질도시 관리에 관한 사항

15. 색채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16. 소규모 도시경관 정비에 관한 사항

17. 민간전문가(총괄·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8. 지역 공공건축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의 제목 “(시민정책담당관)”을 “(시민소통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정책담당관”을 각각 “시민소통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8.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19. 중앙협력본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6조의2를 삭제한다.

제6조의3을 제5조의6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6조의3)의 제목 “(소통기

획담당관)”을 “(도시브랜드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6조의3) 제1항 중 “소통기획담당관”을 “도시브랜드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통기획담당관”을 “도시브랜드담당관”으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브랜드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6조의5 및 제6조의6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7(청년정책담당관) ① 청년정책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청년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보좌한다.

1.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2. 청년 기본 조례 등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지원
5. 청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청년 고용촉진 인턴사업
7.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8. 중앙부처 청년일자리지원사업연계
9.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제 추진

10. 청년 주거 지원 및 생활지원

11. 청년 진로 및 교육지원 등

12. 청년 구직활동 지원

13. 청년 고용안정 지원

14. 청년소통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청년 주간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16.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 중 “평생교육담당관”을 “교육협력담당관”으로, “국제협력담당관”을 “국제평화협력담당관”으로, “회계담당관, 재산관리담당관”을 “회계담당관 및 공공시설혁신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예산ㆍ재정관리ㆍ세정ㆍ납세협력ㆍ회계ㆍ재산관리”를 “예산ㆍ재정관리ㆍ세정ㆍ납세협력ㆍ회계ㆍ공공시설혁신”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9호, 제34호, 제36호 및 제3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생교육담당관”을 “교육협력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에 제21호부터 제2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서해평화 관련 업무 총괄 및 기획

22. 서해평화 포럼 구성 및 운영

23. 평화공감사업 추진 및 통일센터지원 업무

24.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이북5도사무소 지원

25. 동북아 및 남북교류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26. 남북 경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7. 남북 기반시설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8. 민주평화통일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29.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제7조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재산관리담당관”을 “공공시설혁신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공공시설 실태조사 및 재배치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의 제목 “(일자리경제본부)”를 “(경제산업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제산업본부에 경제정책과, 투자창업과, 산업진흥과, 전략산업과, 소상공인정책과, 사회적경제과, 노동정책과, 농축산유통과를 둔다.

제8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사회적경제과장”을 “경제정책과장, 소상공인정책과장, 사회적경제과장, 노동정책과장”으로, “보하며, 산업진흥과장, 미래산업과장, 투자창업과장”을 “보하며, 투자창업과장, 산업진흥과장, 전략산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4호부터 제47호까지를 각각 제45호부터 제4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4. 인천형 뉴딜정책 총괄

제8조제8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항(종전의 제8항)에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지하도로(상가)에 관한 업무

19. 지하상가 위・수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0. 지하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8조제9항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제13항으로 하며, 같은 조 12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12항)에 제5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산업과장”을 “전략산업과장”으로 한다.

56.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제15항을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을 제1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⑰ 노동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정책 계획 수립 및 노동현안 지원 총괄
2. 노사화합 및 지원정책의 수립 및 조정
3.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4. 노동 관련 단체 지원 및 육성
5. 노사 분규 및 노동쟁의의 예방 등에 관한 사항
6.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 및 근로자문화센터 지도감독
7.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 등 노동조합에 관한 업무
8. 비정규직 종합대책 총괄·조정
9. 생활임금 결정에 관한 사항
10. 지역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11. 노동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
12. 소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종사자 등에 대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를 각각 제16조의5, 제16조의6 및 제16조의4로

한다.

제16조의4(종전의 제11조)의 제목 중 “(문화관광국) ”를 “(문화체육관광국)”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관광국”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도서관정책과, 관광진흥과,”를 “체육진흥과, 관광진흥과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유산과장, 도서관정책과장”을 “문화유산과장”으로, “지방서기관으로,”를 “지방서기관으로, 체육진흥과장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7호를 제4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7호부터 제4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7. 도서관 정책에 관한 사항

38.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 및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39. 도서관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0. 공공도서관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1.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개관 100주년 기념사업

42. 도서관 정보서비스위원회 등 소관위원회 운영

43. 인천광역시도서관발전진흥원 지원 및 관리

44.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5.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46. 지역서점 운영 활성화 지원

47. 출판, 인쇄산업 관련 사항

제16조의4(종전의 제1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서관정책과장”을 “체육진흥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7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 레크리에이션 및 레저활동 지도육성
3. 건전생활 관련 프로그램 보급 및 지도
4. 체육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
5.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체육관련 단체 지도육성 및 지원
6. 직장 운동경기부 관리운영
7. 체육관련 행사의 주관(전문체육)
8. 체육시설의 건립 및 유지관리
9. 체육시설 개발확충 및 설치이용
10. 기타 체육시설의 개·보수 및 미화 등에 관한 사항
11. 문학경기장등 위탁관리 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12. 종목별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개최
13. 국제체육교류에 관한 업무
14. 포스트 월드컵 관련 업무
15.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준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종목별 전국대회 유치, 신설 및 개최
17. 전국소년체전 개최 전반에 관한 사항
18. 전국체전 등의 평가분석 및 백서 발간
19. AG 신설경기장과 관련부지 활용 방안 수립·추진
20. 스포츠 외교 사업 추진
21.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정산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의3의 제목 “(건강체육국)”을 “(건강보건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강체육국에 보건의료정책과, 감염병관리과, 체육진흥과”를 “건강보건국에 보건의료정책과, 감염병관리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체육진흥과장”을 “지방기술서기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4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지역환경보건에 관한 사항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택시물류과장”을 각각 “택시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3호부터 제29호까지 및 제34호부터 제4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41호 및 제4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2.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미래교통수단에 관한 사항

제14조제1항 중 “혁신과, 청사건립추진단, 시민봉사과”를 “민간협력과, 시민봉사과, 청사시설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혁신과장”을 “민간협력과장”으로, “청사건립추진단장, 시민봉사과장”을 “시민봉사과장 및 청사시설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7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2호 및 제23호를 각각 제25호 및 제2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시정메시지 개발ㆍ관리ㆍ전달

23. 정책메시지 개발ㆍ관리

24. 인천애뜰 사용허가 및 운영

제1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민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관협치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2.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관리업무 총괄
4. 협치 친화형 제도 신설·개선에 관한 사항
5. 인천형 민관협치 모델 발굴 추진
8. 비영리 법인·단체 총괄관리
10. 출향인사 및 향우회에 관한 업무
11.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관리
12.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사항
13. 지역공동체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
14. 주민자치 활성화단체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6. 주민자치제도 혁신에 관한 사항
17.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및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18. 공동체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19. 마을공동체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

20. 지역사회혁신에 관한 사항

21. 민간위탁사업 사무 총괄에 관한 사항

22.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3. 민간위탁사업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사항

제14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사건립추진단장”을 “청사시설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청사 및 관사의 관리(임대 등), 영선에 관한 업무

2. 청사 신축, 증축, 개축, 보수공사, 사무실 재배치 등 관련 업무

3. 청사의 조경·방역 및 관련비품 관리

4. 회의실(방송시설 포함), 식당, 매점 등 청내 시설물 유지관리

5.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관리

6. 인천애뜰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의2 및 제16조를 각각 제13조의3 및 제13조의2로 한다.

제13조의2(종전의 제16조)제1항 중 “도시경관건축과”를 “건축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경관건축과장”을 “캠프마켓과장, 건축과장”으로, “시설계획과장 및 캠프마켓과장”을 “시설계획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경관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 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의3(종전의 제15조의2)제1항 중 “재생정책과, 재생콘텐츠과”를 “재생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하며, 재생콘텐츠과장”을 “보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6조의3을 제13조의4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6조의3) 제1항 중 “항공과”를 “항공과, 물류정책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하고, 섬발전지원과장”을 “보하고, 물류정책과장 및 섬발전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물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및 지역물류현황 조사
2. 물류의 표준화, 자동화, 정보화 개선 연구에 관한 사항
3. 물류단지 조성·개발·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에 관한 사항
5.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6. 국제물류 박람회, 물류포럼 및 관련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동아시아 경제교류기구 물류분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8.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주선업등록 등에 관한 사무
9. 화물자동차운수사업(화물, 주선)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10. 화물자동차 관련 제도 개선 및 관련법정비
11.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협회·단체 지도감독
12. 화물자동차운수사업(화물, 주선)조합 및 화물운수사업법 행정처분 등 지도·감독

13.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및 부정수급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4. 화물자동차 법규위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15. 복합운송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생활물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항만·항공 물류 전반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물류 정책에 관한 사항

제13조의4(종전의 제16조의3)제6항(종전의 제5항)에 제30호부터 제3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섬 관광객 유치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1. 섬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2. 섬 관광 포털사이트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건강체육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 중 “소통기획담당관”을 각각 “도시브랜드담당관”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중 “재산관리담당관”을 “공공시설혁신담당관”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1항제1호 중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각각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다목 중 “재산관리담당관”을 “공공시설혁신담당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재산관리담당관”을 “공공시설혁신담당관”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대변인, 시민정책담당관, 협치인권담당관, 소통기획담당관, 남북교류협력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을 “시정혁신담당관, 글로벌도시기획단,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홍보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 도시디자인단, 시민소통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대변인”을 각각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약사 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건강체육국장”을 “건강보건국장”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진흥관실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전단 중 “일자리경제본부장”을 “경제산업본부장”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 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대변인실”을 “홍보담당관실”으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산관리담당관”을 “공공시설혁신담당관”으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소통협력관”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을 “국제협력담당관”으로 한다.

⑫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한다.

⑬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중 “협치인권담당관”을 “민관협력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혁신과”를 “시정혁신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일자리경제과”를 “경제정책과”으로 한다.

별표 2의 순번 7의 처리내용란 제1호 중 “대변인, 시민정책담당관, 협치인권담당관, 소통기획담당관, 남북교류협력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을 “시정혁신담당관, 글로벌도시기획단,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홍보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 도시디자인단, 시민소통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표 순번 18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 18 | 공포(발령)문 시행 및 시보에 게재 | 법무담당관<br>홍보담당관 | ○ 공포(발령)문을 시행<br>○ 법무당당관은 홍보담당관에게 공포(발령)문을 시보에 게재 의뢰하고, 홍보담당관은 인천광역시보에 게재・배포<br>○ 법무담당관은 자치법규시스템에 공포(발령)문을 등재 |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3조(보좌기관)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대변인을 두고, 행정부시장 밑에 감사관을 두며,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밑에 시민정책담당관, 협치인권담당관, 소통기획담당관, 남북교류협력담당관 및 노동정책담당관을 둔다.<br><br>② 시민정책, 협치인권, 소통기획 및 남북교류협력 분야 등 정무기능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소통협력관을 두며, 소통협력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br>③ 교통, 환경 및 체육시설 분야에 대하여 행정부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통환경조정관을 두며, 교통환경조정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 | 제3조(보좌기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시정혁신담당관, 글로벌도시기획단 및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을 두고, 행정부시장 밑에 감사관, 홍보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 및 도시디자인단을 두며, 문화복지정무부시장 밑에 시민소통담당관 및 청년정책담당관을 둔다. |

| | |
|---|---|
| 로 보한다.<br>④ 해양항공, 도시재생, 도시계획 및 주택녹지 분야에 대하여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원도심재생조정관을 두며, 원도심재생조정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
| 제4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br>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br>③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br>1. ~ 23. (생 략)<br><신 설> | 제5조의5(홍보담당관) ① 홍보담당관----------.<br><삭 제><br>③ 홍보담당관----------행정부시장---.<br>1. ~ 23. (현행과 같음)<br>제4조의2(시정혁신담당관) ① 시정혁신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br>②시정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br>1. 시정혁신 관련 정책 총괄· |

| | |
|---|---|
| | 조정 및 발굴에 관한 사항<br>2. 시정혁신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br>3. 혁신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br>4. 혁신 정책 협업지원에 관한 사항<br>5. 혁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br>6. 업무개선 사례 발굴, 도입 및 확산<br>7. 시민 제안에 관한 사항<br>8. 공무원 제안에 관한 사항<br>9.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br>10. 규제개혁(기업 등 지역현장) 과제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br>11. 적극행정 계획 수립 및 추진 총괄<br>12.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사항 |
| <신 설> | 제4조의3(글로벌도시기획단) ① 글로벌도시기획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br>② 글로벌도시기획단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br>1. 뉴홍콩시티 조성을 위한 종 |

| | |
|---|---|
| | 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br>2. 뉴홍콩시티 조성을 위한 마중물사업 발굴 및 추진<br>3. 뉴홍콩시티 관련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br>4. 뉴홍콩시티 조성 관련 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 |
| <신 설> | 제4조의4(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br>①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br>②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br>1. 제물포르네상스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br>2. 제물포르네상스 조성에 관한 사항<br>3.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br>4.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br>5. 내항재개발 정책수립 및 기본구상에 관한 사항<br>6.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br>7.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 |

| | |
|---|---|
| | 업에 관한 사항<br>8. 상상플랫폼 조성에 관한 사항<br>9.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br>10. 월미 해양복합문화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br>11. 배다리 우각로 근대문화길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br>12. 신포역 지하공공보도 연장 사업에 관한 사항<br>13. 우회고가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br>14. 원도심특별회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신 설> | 제5조의7(도시디자인단) ① 도시디자인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br>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디자인단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br>③ 도시디자인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시장을 보좌한 |

| | |
|---|---|
| | 다.<br>1. 도시경관계획 수립<br>2. 자연, 수변, 시가지, 역사·문화, 도서, 교통·산업, 도로경관 및 야간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br>3. 각종 경관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br>4. 도시경관형성 및 발전을 위한 제도연구,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br>5. 경관위원회 운영 및 지구단위계획 등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br>6. 각종 개발사업 경관 협의 및 평가, 그 밖에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br>7. 도시개성창조사업에 관한 사항<br>8. 도시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br>9. 경관·미관 등 용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br>10.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br>11. 경관 관련 비영리단체 지원 및 지도감독<br>12.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 |

| | |
|---|---|
| | 이드라인 작성<br>13. 각종 경관형성 관련 가이드라인 작성<br>14. 건축물 및 도시기반시설의 품질도시 관리에 관한 사항<br>15. 색채디자인 기본계획 수립<br>16. 소규모 도시경관 정비에 관한 사항<br>17. 민간전문가(총괄·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br>18. 지역 공공건축 지원에 관한 사항 |
| 제6조(시민정책담당관) ① 시민정책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br>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민정책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br>③ 시민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보좌한다.<br>1. ~ 12. (생 략)<br>13. 시정혁신 관련 정책 총괄· | 제6조(시민소통담당관) ① 시민소통담당관----------.<br>② ---------- 시민소통담당관----------.<br>③ 시민소통담당관---------- 문화복지정무부시장---------.<br>1. ~ 12. (현행과 같음)<br><삭 제> |

| | |
|---|---|
| 조정 및 발굴 | |
| 14. ~ 16. (생 략) | 14. ~ 16. (현행과 같음) |
| <신 설> | 17.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 <신 설> | 18.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
| <신 설> | 19. 중앙협력본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 제6조의2(협치인권담당관) ① 협치인권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br>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치인권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br>③ 협치인권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보좌한다.<br>1. 민관협치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br>2.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에 관한 사항<br>3. 위원회 관리업무 총괄<br>4. 협치 친화형 제도 신설·개 | <삭 제> |

선에 관한 사항
5. 인천형 민관협치 모델 발굴 추진
6. 삭 제
7. 삭 제
8. 비영리 법인·단체 총괄관리
9. 삭 제
10. 출향인사 및 향우회에 관한 업무
11.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관리
12.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사항
13. 지역공동체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
14. 주민자치 활성화단체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6. 주민자치제도 혁신에 관한 사항
17.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및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18. 공동체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19. 마을공동체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
20.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 | |
|---|---|
| 시행<br>21.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br>22. 지역사회혁신에 관한 사항 | |
| 제6조의3(소통기획담당관) ① 소통기획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br><신 설> | 제5조의6(도시브랜드담당관) ① 도시브랜드담당관----------.<br>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브랜드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③ 소통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보좌한다.<br>1. ~ 9. (생 략) | ③ 도시브랜드담당관---------- 행정부시장----------.<br>1. ~ 9. (현행과 같음) |
| 제6조의5(남북교류협력담당관) ①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br>② 삭 제<br>③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보좌한다.<br>1. 서해평화 관련 업무 총괄 및 기획 | <삭 제> |

| | | |
|---|---|---|
| 2. 서해평화 포럼 구성 및 운영<br>3. 평화공감사업 추진 및 통일 센터지원 업무<br>4.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이북5도사무소 지원<br>5. 동북아 및 남북교류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br>6. 남북 경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br>7. 남북 기반시설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br>8. 민주평화통일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br>9.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 | |
| 제6조의6(노동정책담당관) ① 노동정책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br>② 노동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보좌한다.<br>1. 노동정책 계획 수립 및 노동현안 지원 총괄<br>2. 노사화합 및 지원정책의 수립 및 조정<br>3.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운영<br>4. 노동 관련 단체 지원 및 육성<br>5. 노사 분규 및 노동쟁의의 예 | <삭 제> | |

| | | |
|---|---|---|
| 방 등에 관한 사항<br>6.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 및 근로자문화센터 지도감독<br>7.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 등 노동조합에 관한 업무<br>8. 비정규직 종합대책 총괄·조정<br>9. 생활임금 결정에 관한 사항<br>10. 지역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br>11. 노동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br>12. 소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종사자 등에 대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 |
| <신 설> | 제6조의7(청년정책담당관) ① 청년정책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br>② 청년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보좌한다.<br>1.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br>2. 청년 기본 조례 등에 관한 사항<br>3.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4. 청년정책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지원<br>5. 청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br>6. 청년 고용촉진 인턴사업<br>7. 대학일자리센터 지원<br>8. 중앙부처 청년일자리지원사업연계<br>9.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제 추진<br>10. 청년 주거 지원 및 생활지원<br>11. 청년 진로 및 교육지원 등<br>12. 청년 구직활동 지원<br>13. 청년 고용안정 지원<br>14. 청년소통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br>15. 청년 주간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br>16.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
| 제7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재정기획관, 정책기획관, 평생교육담당관, 평가담당관, 법무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데이터혁신담당관, 스마트도시담당관, 예산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 지방세정책담당관, 납세협력담당관, 회계담 | 제7조(기획조정실) ① ---------- 교육협력담당관---------- ---------국제평화협력담당관 ---------- ---------- ---------- ---------- |

| | |
|---|---|
| 당관, 재산관리담당관을 둔다. | 회계담당관 및 공공시설혁신담당관----------.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④ 재정기획관은 예산·재정관리·세정·납세협력·회계·재산관리 업무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④ ---------- 예산·재정관리·세정·납세협력·회계·공공시설혁신 ----------. |
| ⑤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⑤ ----------. |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 9. 중앙협력본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삭 제> |
| 10. ~ 32. (생 략) | 10. ~ 32. (현행과 같음) |
| 33. 삭 제 | |
| 34. 민간위탁사업 적정성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삭 제> |
| 35. (생 략) | 35. (현행과 같음) |
| 36. 인천형 뉴딜정책 총괄 | <삭 제> |
| 37.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 <삭 제> |
| 38. (생 략) | 38. (현행과 같음) |
| ⑥ 평생교육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⑥ 교육협력담당관----------. |
| 1. ~ 17. (생 략) | 1. ~ 17. (현행과 같음) |
| ⑦ 평가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⑦ ----------.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 | |
|---|---|
| 8. 삭 제 | |
| 9. 시정메시지 개발·관리·전달 | <삭 제> |
| 10. 정책메시지 개발·관리 | <삭 제> |
| ⑧ (생 략) | ⑧ (현행과 같음) |
| ⑨ 삭 제 | |
| ⑩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⑩ 국제평화협력담당관----------. |
| 1. ~ 20. (생 략) | 1. ~ 20. (현행과 같음) |
| <신 설> | 21. 서해평화 관련 업무 총괄 및 기획 |
| <신 설> | 22. 서해평화 포럼 구성 및 운영 |
| <신 설> | 23. 평화공감사업 추진 및 통일센터지원 업무 |
| <신 설> | 24.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이북5도사무소 지원 |
| <신 설> | 25. 동북아 및 남북교류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
| <신 설> | 26. 남북 경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
| <신 설> | 27. 남북 기반시설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
| <신 설> | 28. 민주평화통일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
| <신 설> | 29.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
| ⑪ ~ ⑭ (생 략) | ⑪ ~ ⑭ (현행과 같음) |
| ⑮ 재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 | ⑮ ---------- |

| | |
|---|---|
| 을 분장한다. | --------. |
| 1. ~ 10. (생 략) | 1. ~ 10. (현행과 같음) |
| 11. ~ 23. (생 략) | 11. ~ 23. (현행과 같음) |
| 23.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사항 | 23. ---------- |
| ⑲ 재산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⑲ 공공시설혁신담당관은 ----------. |
| 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 <신 설> | 10. 공공시설 실태조사 및 재배치 등에 관한 사항 |
| 24. 삭 제 | |
| 25.·26. (생 략) | 25.·26. (현행과 같음) |
| 제8조(일자리경제본부) ① 일자리경제본부에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정책과, 청년정책과, 사회적경제과, 산업진흥과, 미래산업과, 투자창업과, 농축산유통과를 둔다. | 제8조(경제산업본부) ① 경제산업본부에 경제정책과, 투자창업과, 산업진흥과, 전략산업과, 소상공인정책과, 사회적경제과, 노동정책과, 농축산유통과를 둔다. |
| ② 본부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사회적경제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각각 보하며, 산업진흥과장, 미래산업과장, 투자창업과장, 농축산유통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 ② ---------- 경제정책과장, 소상공인정책과장, 사회적경제과장, 노동정책과장---------- 보하며, 투자창업과장, 산업진흥과장, 전략산업과장----------. |

| | |
|---|---|
| ③·④ 삭 제 | |
| ⑤ 일자리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⑤ 경제정책과장----------. |
| 1. ~ 43. (생 략) | 1. ~ 43. (현행과 같음) |
| <신 설> | 44. 인천형 뉴딜정책 총괄 |
| 44. ~ 47. (생 략) | 45. ~ 48. (현행 제44호부터 제47호까지와 같음) |
| ⑧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⑪ ----------. |
| 1. ~ 17. (생 략) | 1. ~ 17. (현행과 같음) |
| <신 설> | 18. 지하도로(상가)에 관한 업무 |
| <신 설> | 19. 지하상가 위·수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
| <신 설> | 20. 지하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
| ⑨ 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삭 제> |
| 1.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 |
| 2. 청년 기본 조례 등에 관한 사항 | |
| 3.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 4. 청년정책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지원 | |
| 5. 청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6. 삭 제<br>7. 삭 제<br>8. 삭 제<br>9. 삭 제<br>10. 삭 제<br>11. 삭 제<br>12. 청년 고용촉진 인턴사업<br>13. 대학일자리센터 지원<br>14. 중앙부처 청년일자리지원사업연계<br>15.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제 추진<br>16. 삭 제<br>17. 삭 제<br>18. 삭 제<br>19. 삭 제<br>20. 삭 제<br>21. 청년 주거 지원 및 생활지원<br>22. 청년 진로 및 교육지원 등<br>23. 청년 구직활동 지원<br>24. 청년 고용안정 지원<br>25. 청년소통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br>26. 청년 주간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 |
| ⑩ (생 략) | ⑬ (현행 제10항과 같음) |
| ⑫ 산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 ⑦ ---------- |

| | |
|---|---|
| 분장한다. | ------. |
| 1. ~ 55. (생 략) | 1. ~ 55. (현행과 같음) |
| <신 설> | 56.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 ⑬ 미래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⑧ 전략산업과장----------. |
| 1. ~ 19. (생 략) | 1. ~ 19. (현행과 같음) |
| ⑭ <삭 제> | |
| ⑮ (생 략) | ⑥ (현행 제15항과 같음) |
| ⑯ (생 략) | ⑱ (현행 제16항과 같음) |
| <신 설> | ⑰ 노동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br>1. 노동정책 계획 수립 및 노동현안 지원 총괄<br>2. 노사화합 및 지원정책의 수립 및 조정<br>3.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운영<br>4. 노동 관련 단체 지원 및 육성<br>5. 노사 분규 및 노동쟁의의 예방 등에 관한 사항<br>6.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 및 근로자문화센터 지도감독<br>7.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 등 노동조합에 관한 업무<br>8. 비정규직 종합대책 총괄·조정<br>9. 생활임금 결정에 관한 사항 |

| | |
|---|---|
| | 10. 지역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br>11. 노동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br>12. 소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종사자 등에 대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 제10조 · 제10조의2 (생 략) | 제16조의5 · 제16조의6 (현행 제10조 및 제10조의2와 같음) |
| 제10조의3(건강체육국) ① 건강체육국에 보건의료정책과, 감염병관리과, 체육진흥과, 건강증진과, 위생정책과를 둔다.<br>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보건의료정책과장,감염병관리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체육진흥과장, 건강증진과장, 위생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br>③ · ④ (생 략)<br>⑤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br>1.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br>2. 레크리에이션 및 레저활동 지도육성 | 제10조의3(건강보건국) ① 건강보건국에 보건의료정책과, 감염병관리과----------.<br>② ---------- 지방기술서기관으로 ----------.<br>③ · ④ (현행과 같음)<br><삭 제> |

3. 건전생활 관련 프로그램 보급 및 지도
4. 체육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
5.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체육관련 단체 지도육성 및 지원
6. 직장 운동경기부 관리운영
7. 체육관련 행사의 주관(전문체육)
8. 체육시설의 건립 및 유지관리
9. 체육시설 개발확충 및 설치이용
10. 기타 체육시설의 개·보수 및 미화 등에 관한 사항
11. 문학경기장등 위탁관리 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12. 종목별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개최
13. 국제체육교류에 관한 업무
14. 포스트 월드컵 관련 업무
15.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준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종목별 전국대회 유치, 신설 및 개최
17. 전국소년체전 개최 전반에 관한 사항

| | |
|---|---|
| 18. 전국체전 등의 평가분석 및 백서 발간<br>19. AG 신설경기장과 관련부지 활용 방안 수립·추진<br>20. 스포츠 외교 사업 추진<br>21.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정산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
| ⑥·⑦ (생 략) | ⑥·⑦ (현행과 같음) |
| 제11조(문화관광국) ① 문화관광국에 문화예술과,문화콘텐츠과, 문화유산과, 도서관정책과, 관광진흥과, 마이스산업과를 둔다.<br>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문화예술과장, 문화콘텐츠과장, 문화유산과장, 도서관정책과장, 마이스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관광진흥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br>③ 삭 제<br>④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br>1. ~ 36. (생 략)<br><신 설> | 제16조의4(문화체육관광국) ①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관광진흥과 및 ----------.<br>② ---------- 문화유산과장---------- 지방서기관으로, 체육진흥과장 및 ----------.<br>④ ----------.<br>1. ~ 36. (현행과 같음)<br>37. 도서관 정책에 관한 사항 |

| | |
|---|---|
| <신 설> | 38.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 및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
| <신 설> | 39. 도서관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 <신 설> | 40. 공공도서관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 <신 설> | 41.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개관 100주년 기념사업 |
| <신 설> | 42. 도서관 정보서비스위원회 등 소관위원회 운영 |
| <신 설> | 43. 인천광역시도서관발전진흥원 지원 및 관리 |
| <신 설> | 44.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 <신 설> | 45.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
| <신 설> | 46. 지역서점 운영 활성화 지원 |
| <신 설> | 47. 출판, 인쇄산업 관련 사항 |
| 37. (생 략) | 48. (현행 제37호와 같음) |
| ⑤·⑥ (생 략) | ⑤·⑥ (현행과 같음) |
| ⑦ 도서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⑦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도서관 정책에 관한 사항 | 1.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 2. 중앙부처 협력업무 추진 | 2. 레크리에이션 및 레저활동 지도육성 |
| 3.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 3. 건전생활 관련 프로그램 보급 및 지도 |

| | |
|---|---|
| 4. 도서관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4. 체육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 |
| 5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 5.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체육관련 단체 지도육성 및 지원 |
| 7. 작은도서관 협력사업 운영 및 지원 | 6. 직장 운동경기부 관리운영 |
| 8. 공공도서관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7. 체육관련 행사의 주관(전문체육) |
| 9.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개관 100주년 기념사업 | 8. 체육시설의 건립 및 유지관리 |
| 10. 도서관 정보서비스위원회 등 소관위원회 운영 | 9. 체육시설 개발확충 및 설치 이용 |
| 11. 출판, 인쇄산업 관련 사항 | 10. 기타 체육시설의 개·보수 및 미화 등에 관한 사항 |
| 12. 인천광역시도서관발전진흥원 지원 및 관리 | 11. 문학경기장등 위탁관리 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
| 13. 지역서점 운영 활성화 지원 | 12. 종목별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개최 |
| 14.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및 건립 지원 | 13. 국제체육교류에 관한 업무 |
| 15.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 및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 14. 포스트 월드컵 관련 업무 |
| 16. 그 밖에 도서관 업무에 관한 사항 총괄 | 15.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준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 | 16. 종목별 전국대회 유치, 신설 및 개최 |
| | 17. 전국소년체전 개최 전반에 |

| | |
|---|---|
| | 관한 사항<br>18. 전국체전 등의 평가분석 및 백서 발간<br>19. AG 신설경기장과 관련부지 활용 방안 수립·추진<br>20. 스포츠 외교 사업 추진<br>21.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정산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 ⑧·⑨ (생 략) | ⑧·⑨ (현행과 같음) |
| 제12조 (환경국) ① ~ ③ (생 략) | 제12조(환경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
| ④ 생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④ ----------. |
| 1. ~ 22. (생 략) | 1. ~ 22. (현행과 같음) |
| <신 설> | 23. 지역환경보건에 관한 사항 |
| ⑤ ~ ⑩ (생 략) | ⑤ ~ ⑩ (현행과 같음) |
| 제13조 (교통건설국)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교통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택시물류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통관리과장, 교통정보운영과장, 건설심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철도과장, 도로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 제13조(교통건설국) ② ---------- 택시정책과장----------. |

| | |
|---|---|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⑥ 택시물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⑥ 택시정책과장----------. |
| 1. ~ 22. (생 략) | 1. ~ 22. (현행과 같음) |
| 23.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주선업등록 등에 관한 사무 | <삭 제> |
| 24. 화물자동차운수사업(화물, 주선)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 <삭 제> |
| 25. 화물자동차 관련 제도 개선 및 관련법정비 | <삭 제> |
| 26.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협회·단체 지도감독 | <삭 제> |
| 27. 화물자동차운수사업(화물, 주선)조합 및 화물운수사업법 행정처분 등 지도·감독 | <삭 제> |
| 28.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및 부정수급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삭 제> |
| 29. 화물자동차 법규위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 <삭 제> |
| 30. ~ 33. (생 략) | 30. ~ 33. (현행과 같음) |
| 34. 국제물류 박람회, 물류포럼 및 관련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삭 제> |
| 35. 동아시아 경제교류기구 물 | <삭 제> |

| | |
|---|---|
| 류분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
| 36. 복합운송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삭 제> |
| 37.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및 지역물류현황 조사 | <삭 제> |
| 38. 물류의 표준화, 자동화, 정보화 개선 연구에 관한 사항 | <삭 제> |
| 39. 물류단지 조성·개발·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삭 제> |
| 40. 물류터미널 및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에 관한 업무 | <삭 제> |
| <신 설> | 4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 <신 설> | 42.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미래교통수단에 관한 사항 |
| ⑦ ~ ⑫ (생 략) | ⑦ ~ ⑫ (현행과 같음) |
| 제14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 인사과, 자치행정과, 혁신과, 청사건립추진단, 시민봉사과를 둔다. | 제14조(행정국) ① ---------- 민간협력과, 시민봉사과, 청사시설과----------. |
|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 인사과장, 자치행정과장, 혁신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청사건립추진단장, 시민봉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 ② ---------- 민간협력과장---------- 시민봉사과장 및 청사시설과장----------. |

| | |
|---|---|
|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 |
| 1. ~ 16. (생 략) | 1. ~ 16. (현행과 같음) |
| 17. 청사 및 관사의 관리(임대 등), 영선에 관한 업무 | <삭 제> |
| 18. 청사 신축, 증축, 개축, 보수공사, 사무실 재배치 등 관련 업무 | <삭 제> |
| 19. 청사의 조경·방역 및 관련 비품 관리 | <삭 제> |
| 20. 회의실(방송시설 포함), 식당, 매점 등 청내 시설물 유지관리 | <삭 제> |
| 21.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관리 | <삭 제> |
| <신 설> | 22. 시정메시지 개발·관리·전달 |
| <신 설> | 23. 정책메시지 개발·관리 |
| <신 설> | 24. 인천애뜰 사용허가 및 운영 |
| 22.·23. (생 략) | 25.·26. (현행 제22호 및 제23호와 같음) |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 ⑥ 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은 분장한다. | ⑥ 민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혁신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1. 민관협치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
| 2. 혁신 관련 정책 총괄·조정 및 협업지원 | 2.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에 관한 사항 |

| | |
|---|---|
| 3. 혁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3. 위원회 관리업무 총괄 |
| 4. 업무개선 사례 발굴, 도입 및 확산 | 4. 협치 친화형 제도 신설·개선에 관한 사항 |
| 5. 시민 제안에 관한 사항 | 5. 인천형 민관협치 모델 발굴 추진 |
| 6. 공무원 제안에 관한 사항 | <삭 제> |
| 7.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삭 제> |
| 8. 규제개혁(기업 등 지역현장) 과제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8. 비영리 법인·단체 총괄관리 |
| 9. 적극행정 계획 수립 및 추진 총괄 | <삭 제> |
| 10.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사항 | 10. 출향인사 및 향우회에 관한 업무 |
| <신 설> | 11.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관리 |
| <신 설> | 12.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사항 |
| <신 설> | 13. 지역공동체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 |
| <신 설> | 14. 주민자치 활성화단체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 <신 설> | 15.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 <신 설> | 16. 주민자치제도 혁신에 관한 사항 |

| | |
|---|---|
| <신 설> | 17.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및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
| <신 설> | 18. 공동체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
| <신 설> | 19. 마을공동체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 |
| <신 설> | 20. 지역사회혁신에 관한 사항 |
| <신 설> | 21. 민간위탁사업 사무 총괄에 관한 사항 |
| <신 설> | 22.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 <신 설> | 23. 민간위탁사업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 <신 설> | 2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사항 |
| ⑦ 청사건립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⑧ 청사시설과장----------. |
| <신 설> | 1. 청사 및 관사의 관리(임대 등), 영선에 관한 업무 |
| <신 설> | 2. 청사 신축, 증축, 개축, 보수공사, 사무실 재배치 등 관련 업무 |
| <신 설> | 3. 청사의 조경·방역 및 관련 비품 관리 |
| <신 설> | 4. 회의실(방송시설 포함), 식당, 매점 등 청내 시설물 유지관리 |

| | |
|---|---|
| <신 설> | 5.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관리 |
| <신 설> | 6. 인천애뜰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
| 1. ~ 8. (생 략) | 7. ~ 14. (현행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
| ⑧ (생 략) | ⑦ (현행 제8항과 같음) |
| ⑨ (생 략) | ⑨ (현행과 같음) |
| 제15조의2(도시재생녹지국) ① 도시재생녹지국에 재생정책과, 재생콘텐츠과, 고속도로재생과, 주거재생과, 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를 둔다. | 제13조의3(도시재생녹지국) ① ---------- 재생정책과----------. |
|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재생정책과장 및 녹지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하며, 재생콘텐츠과장, 고속도로재생과장, 주거재생과장 및 공원조성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 ② ---------- 보하며----------.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④ 재생콘텐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삭 제> |
| 1.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 |
|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

| | |
|---|---|
| 3. 내항재개발 정책수립 및 기본구상에 관한 사항<br>4.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br>5.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br>6. 상상플랫폼 조성에 관한 사항<br>7.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br>8. 월미 해양복합문화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br>9. 배다리 우각로 근대문화길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br>10. 신포역 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에 관한 사항<br>11. 우회고가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 |
| ⑤ ~ ⑪ (생 략) | ⑤ ~ ⑪ (현행과 같음) |
| 제16조(도시계획국) ① 도시계획국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시설계획과, 토지정보과, 캠프마켓과, 도시경관건축과, 주택정책과를 둔다.<br>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과장, 토지정보과장, 도시경관건 | 제13조의2(도시계획국) ① ---------- 건축과----------.<br>② ---------- 캠프마켓과장, |

| | |
|---|---|
| 축과장 및 주택정책과장 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시설계획과장 및 캠프마켓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 건축과장 ---------- 시설계획과장----------. |
| ③ ~ ⑨ (생 략) | ③ ~ ⑨ (현행과 같음) |
| ⑩ 도시경관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⑩ 건축과장----------. |
| 1. 도시경관계획 수립 | <삭 제> |
| 2. 자연, 수변, 시가지, 역사·문화, 도서, 교통·산업, 도로경관 및 야간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삭 제> |
| 3. 각종 경관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 <삭 제> |
| 4. 도시경관형성 및 발전을 위한 제도연구,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삭 제> |
| 5. 경관위원회 운영 및 지구단위계획 등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 <삭 제> |
| 6. 각종 개발사업 경관 협의 및 평가, 그 밖에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 | <삭 제> |
| 7. 도시개성창조사업에 관한 사항 | <삭 제> |
| 8. 도시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 <삭 제> |

| | |
|---|---|
| 관한 사항 | |
| 9. 경관·미관 등 용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삭 제> |
| 10.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 | <삭 제> |
| 11. (생 략) | 11. (현행과 같음) |
| 12. 경관 관련 비영리단체 지원 및 지도감독 | <삭 제> |
| 13.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작성 | <삭 제> |
| 14. 각종 경관형성 관련 가이드라인 작성 | <삭 제> |
| 15. 광고물, 건축물 및 도시기반시설의 품질도시 관리에 관한 사항 | <삭 제> |
| 16. 색채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 <삭 제> |
| 17. 소규모 도시경관 정비에 관한 사항 | <삭 제> |
| 18. ~ 22. (생 략) | 18. ~ 22. (현행과 같음) |
| 23. 민간전문가(총괄·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삭 제> |
| 24. 지역 공공건축 지원에 관한 사항 | <삭 제> |
| ⑪ (생 략) | ⑪ (현행과 같음) |
| 제16조의3(해양항공국) ① 해양항공국에 해양항만과, 항공과, 섬발전지원과, 해양환경과, 해양친수과, 수산과를 둔다. | 제13조의4(해양항공국) ① ---------- 항공과, 물류정책과----------. |

| | |
|---|---|
|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섬발전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며, 해양항만과장, 항공과장, 해양환경과장 및 해양친수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하고, 수산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 보하고, 물류정책과장 및 섬발전지원과장----------. |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신 설> | ⑤ 물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br>1.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및 지역물류현황 조사<br>2. 물류의 표준화, 자동화, 정보화 개선 연구에 관한 사항<br>3. 물류단지 조성·개발·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br>4. 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에 관한 사항<br>5.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br>6. 국제물류 박람회, 물류포럼 및 관련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br>7. 동아시아 경제교류기구 물류분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br>8.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및 화물 |

| | |
|---|---|
| | 자동차주선업등록 등에 관한 사무<br>9. 화물자동차운수사업(화물, 주선)조합에 대한 지도감독<br>10. 화물자동차 관련 제도 개선 및 관련법정비<br>11.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협회·단체 지도감독<br>12. 화물자동차운수사업(화물, 주선)조합 및 화물운수사업법 행정처분 등 지도·감독<br>13.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및 부정수급 관리 등에 관한 사항<br>14. 화물자동차 법규위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br>15. 복합운송 활성화에 관한 사항<br>16. 생활물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br>17. 항만·항공 물류 전반에 관한 사항<br>18. 그 밖에 물류 정책에 관한 사항 |
| ⑤ 섬발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⑥ ----------. |

| | |
|---|---|
| 1. ~ 24. (생 략) | 1. ~ 24. (현행과 같음) |
| 25. ~ 29. 삭 제 | |
| <신 설> | 30. 섬 관광객 유치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 <신 설> | 31. 섬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 <신 설> | 32. 섬 관광 포털사이트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⑥ ~ ⑧ (생 략) | ⑦ ~ ⑨ (현행 제6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

##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⑥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과 실·과·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의 지휘·감독 하에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보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는 경우

제11조(시·도의 과·담당관 등의 설치) 시·도 본청에 두는 과·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78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7월 20일

인천광역시장

##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반영한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 구현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업무 추진을 위한 정원 25명 증원(안 별표1)

- 총 정원 : 7,505명 → 7,530명(25명 증)

나. 일반직 및 연구직 정원 조정(안 별표 1부터 별표4 및 별표 6)

- 일반직 정원 : 3,853명 → 3,877명(24명 증)

· 일반직 4급 정원 : 158명 → 159명(1명 증)

· 일반직 5급 정원 : 631명 → 632명(1명 증)

· 일반직 6급 정원 : 1,380명 → 1,395명(15명 증)

· 일반직 7급 정원 : 1,336명 → 1,327명(9명 감)

· 일반직 8급 정원 : 287명 → 291명(4명 증)

· 일반직 9급 정원 : 27명 → 39명(12명 증)

- 연구직 정원 : 197명 → 198명(1명 증)

· 연구사 정원 : 164명 → 165명(1명 증)

##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원윤호(전화번호 032-440-2152, 팩스번호 032-440-8628, 전자메일 manyearsnow@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 직렬별 정원

| 직급별 \ 기관별 | 총 계 | 본 청 | 의 회 사무처 | 직속기관 | 경제자유구 역 청 | 사업소 | 합 의 제 행정기관 |
|---|---|---|---|---|---|---|---|
| 총 계 | 7,530 | 2,400 | 118 | 3,426 | 297 | 1,265 | 24 |
| 정무직 소계 | 3 | 1 | | | | | 2 |
| 정무 | 3 | 1 | | | | | 2 |
| 시장 | 1 | 1 | | | | | |
| 위원장 | 1 | | | | | | 1 |
| 상임위원 | 1 | | | | | | 1 |
| 일반직 소계 | 3,877 | 2,147 | 111 | 90 | 297 | 1,210 | 22 |
| 1급 | 1 | | | | 1 | | |
| 관리관 | 1 | | | | 1 | | |
| 2급 | 1 | | | | 1 | | |
| 이사관 | 1 | | | | 1 | | |
| 2-3급 | 3 | 2 | 1 | | | | |
| 이사관·부이사관 | 3 | 2 | 1 | | | | |
| 3급 | 20 | 12 | | 1 | 4 | 3 | |
| 부이사관 | 20 | 12 | | 1 | 4 | 3 | |
| 3-4급 | 2 | 2 | | | | | |
| 부이사관·서기관 | 2 | 2 | | | | | |
| 4급 | 159 | 98 | 3 | 4 | 16 | 37 | 1 |
| 서기관 | 69 | 45 | 3 | 2 | 7 | 11 | 1 |
| 기술서기관 | 28 | 12 | | | 6 | 10 | |
| 서기관·기술서기관 | 59 | 41 | | 1 | 3 | 14 | |
| 기술서기관·수의연구관 | 1 | | | 1 | | | |
| 기술서기관·어촌지도관 | 1 | | | | | 1 | |
| 서기관·기술서기관·해양수산연구관 | 1 | | | | | 1 | |
| 5급 | 632 | 403 | 19 | 10 | 65 | 131 | 4 |
| 행정 | 294 | 200 | 15 | 6 | 30 | 39 | 4 |
| 사회복지 | 2 | 2 | | | | | |
| 사서 | 1 | | | | | 1 | |
| 공업 | 36 | 10 | | | 4 | 22 | |
| 농업 | 4 | 4 | | | | | |
| 녹지 | 15 | 6 | | | 2 | 7 | |
| 해양수산 | 4 | 4 | | | | | |
| 보건 | 5 | 4 | | | 1 | | |
| 간호 | 1 | 1 | | | | | |
| 환경 | 9 | 8 | | | 1 | | |

| 직급별 \ 기관별 | 총 계 | 본 청 | 의 회 사무처 | 직속기관 | 경제자유구 역 청 | 사업소 | 합 의 제 행정기관 |
|---|---|---|---|---|---|---|---|
| 시설 | 112 | 67 | 2 | 1 | 16 | 26 | |
| 방송통신 | 7 | 5 | | | 1 | 1 | |
| 행정·사회복지 | 11 | 9 | | | | 2 | |
| 행정·사서 | 6 | 1 | | | | 5 | |
| 행정·속기 | 1 | | 1 | | | | |
| 행정·공업 | 11 | 4 | | | | 7 | |
| 행정·농업 | 5 | 1 | | | | 4 | |
| 행정·녹지 | 2 | | | | 1 | 1 | |
| 행정·해양수산 | 1 | | | | | 1 | |
| 행정·보건 | 3 | 3 | | | | | |
| 행정·환경 | 5 | 5 | | | | | |
| 행정·시설 | 30 | 24 | | | 6 | | |
| 행정·방재안전 | 2 | 2 | | | | | |
| 행정·학예연구 | 4 | 1 | | | | 3 | |
| 행정·방송통신 | 2 | 2 | | | | | |
| 행정·운전 | 1 | 1 | | | | | |
| 공업·환경 | 2 | 2 | | | | | |
| 공업·시설 | 12 | 4 | | | | 8 | |
| 농업·수의 | 2 | 2 | | | | | |
| 녹지·환경 | 1 | 1 | | | | | |
| 녹지·시설 | 1 | 1 | | | | | |
| 녹지·녹지연구 | 1 | | | | | 1 | |
| 수의·수의연구 | 4 | 1 | | 3 | | | |
| 해양수산·어촌지도 | 1 | | | | | 1 | |
|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 | 1 | | | | | 1 | |
| 보건·간호 | 6 | 6 | | | | | |
| 보건·환경 | 1 | 1 | | | | | |
| 환경·시설 | 2 | 2 | | | | | |
| 시설·방송통신 | 1 | | | | 1 | | |
| 행정·공업·환경 | 2 | 2 | | | | | |
| 행정·공업·시설 | 2 | 1 | 1 | | | | |
| 행정·공업·방송통신 | 1 | 1 | | | | | |
| 행정·녹지·환경 | 3 | 1 | | | 1 | 1 | |
| 행정·녹지·시설 | 1 | | | | 1 | | |
| 행정·해양수산·환경 | 2 | 2 | | | | | |
| 행정·보건·간호 | 1 | 1 | | | | | |

| 직급별 \ 기관별 | 총 계 | 본 청 | 의 회 사무처 | 직속기관 | 경제자유구 역 청 | 사업소 | 합 의 제 행정기관 |
|---|---|---|---|---|---|---|---|
| 행정·시설·방재안전 | 1 | 1 | | | | | |
| 공업·보건·식품위생 | 1 | 1 | | | | | |
| 공업·보건·환경 | 1 | 1 | | | | | |
| 공업·환경·시설 | 1 | 1 | | | | | |
| 행정·보건·약무·간호 | 1 | 1 | | | | | |
| 보건·의료기술·약무·간호 | 1 | 1 | | | | | |
| 보건·의무·약무·간호 | 1 | 1 | | | | | |
| 행정(임시정원) | 1 | 1 | | | | | |
| 보건·간호(임시정원) | 1 | 1 | | | | | |
| 의무(임시정원) | 1 | 1 | | | | | |
| 행정·보건(임시정원) | 1 | 1 | | | | | |
| 6급 | *1,395* | *892* | 51 | 18 | 111 | *314* | 9 |
| 행정 | *536* | *382* | 37 | 8 | 38 | 63 | 8 |
| 세무 | 32 | 30 | | | 1 | 1 | |
| 전산 | *63* | *48* | 2 | 2 | 4 | 6 | 1 |
| 사회복지 | 12 | 12 | | | | | |
| 사서 | 7 | 1 | | | | 6 | |
| 공업 | *116* | 42 | | | 8 | *66* | |
| 농업 | 15 | 11 | | | | 4 | |
| 녹지 | 25 | 12 | | | 4 | 9 | |
| 수의 | 6 | 3 | | 3 | | | |
| 해양수산 | 18 | 18 | | | | | |
| 보건 | 20 | 18 | | | 2 | | |
| 간호 | 6 | 6 | | | | | |
| 환경 | 30 | 25 | 1 | | 4 | | |
| 시설 | *251* | *158* | 3 | | 36 | *54* | |
| 방송통신 | 25 | *13* | *1* | | 5 | 6 | |
| 행정·세무 | 4 | 4 | | | | | |
| 행정·전산 | 4 | 4 | | | | | |
| 행정·사회복지 | 16 | 14 | 1 | | | 1 | |
| 행정·사서 | *3* | *1* | | | | 2 | |
| 행정·공업 | 5 | 3 | | | 1 | 1 | |
| 행정·농업 | 1 | 1 | | | | | |
| 행정·녹지 | 2 | | | | | 2 | |
| 행정·보건 | 2 | 2 | | | | | |
| 행정·간호 | 1 | 1 | | | | | |

| 직급별 \ 기관별 | 총 계 | 본 청 | 의 회 사무처 | 직속기관 | 경제자유구 역 청 | 사업소 | 합 의 제 행정기관 |
|---|---|---|---|---|---|---|---|
| 행정·환경 | 6 | 5 | | | 1 | | |
| 행정·시설 | 23 | 20 | | | 3 | | |
| 행정·학예연구 | 1 | | | | | 1 | |
| 전산·방송통신 | 3 | 3 | | | | | |
| 공업·시설 | 22 | 2 | 1 | | 1 | 18 | |
| 녹지·환경 | 3 | 3 | | | | | |
| 녹지·시설 | 1 | | | | | 1 | |
| 녹지·녹지연구 | 2 | | | | | 2 | |
| 수의·수의연구 | 1 | | | 1 | | | |
| 해양수산·환경 | 2 | 2 | | | | | |
| 해양수산·어촌지도 | 6 | 1 | | | | 5 | |
|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 | 2 | | | | | 2 | |
| 보건·간호 | 4 | 4 | | | | | |
| 보건·환경 | 2 | 2 | | | | | |
| 보건·보건연구 | 1 | 1 | | | | | |
| 환경·시설 | 2 | 2 | | | | | |
| 시설·방재안전 | 2 | 2 | | | | | |
| 행정·전산·시설 | 1 | 1 | | | | | |
| 행정·공업·시설 | 1 | 1 | | | | | |
| 행정·보건·간호 | 1 | 1 | | | | | |
| 공업·보건·환경 | 2 | 2 | | | | | |
| 보건·의료기술·간호 | 1 | 1 | | | | | |
| 보건·약무·간호 | 1 | 1 | | | | | |
| 보건·의무·약무·간호 | 1 | 1 | | | | | |
| 운전 | 15 | 5 | 2 | 1 | 3 | 4 | |
| 간호조무 | 1 | | | 1 | | | |
| 위생 | 2 | 1 | | 1 | | | |
| 속기 | 1 | | 1 | | | | |
| 방호 | 4 | 3 | 1 | | | | |
| 토목운영 | 1 | | | | | 1 | |
| 통신운영 | 3 | 1 | | | | 2 | |
| 전기운영 | 15 | 1 | | | | 14 | |
| 기계운영 | 35 | 1 | | | | 34 | |
| 열관리운영 | 1 | | | | | 1 | |
| 사무운영 | 17 | 7 | 1 | 1 | | 8 | |
| 행정(임시정원) | 1 | 1 | | | | | |

| 직급별 \ 기관별 | 총 계 | 본 청 | 의 회 사무처 | 직속기관 | 경제자유구 역 청 | 사업소 | 합 의 제 행정기관 |
|---|---|---|---|---|---|---|---|
| 보건(임시정원) | 2 | 2 | | | | | |
| 간호(임시정원) | 1 | 1 | | | | | |
| 보건·간호(임시정원) | 3 | 3 | | | | | |
| 의료기술·약무(임시정원) | 1 | 1 | | | | | |
| 보건·의료기술·간호(임시정원) | 1 | 1 | | | | | |
| 7급 | *1,327* | *673* | 31 | 44 | 87 | *486* | 6 |
| 행정 | *443* | *283* | 21 | 12 | 27 | 96 | 4 |
| 세무 | 11 | 10 | | | | 1 | |
| 전산 | 39 | 25 | | 2 | | 12 | |
| 사회복지 | 18 | 15 | | | | 3 | |
| 사서 | 13 | *1* | 1 | | | *11* | |
| 공업 | *172* | 32 | | 6 | 4 | *130* | |
| 농업 | 14 | 5 | | | | 9 | |
| 녹지 | 31 | 12 | | | 4 | 15 | |
| 수의 | 3 | 1 | | 2 | | | |
| 해양수산 | 9 | 9 | | | | | |
| 보건 | 13 | 9 | | 2 | 2 | | |
| 간호 | 4 | 4 | | | | | |
| 환경 | 24 | 17 | | | 3 | 4 | |
| 시설 | *225* | 114 | 1 | 2 | 32 | *76* | |
| 방재안전 | 2 | 2 | | | | | |
| 방송통신 | *26* | *14* | 1 | 1 | 4 | 6 | |
| 행정·세무 | 2 | 2 | | | | | |
| 행정·전산 | 7 | 5 | 1 | | | 1 | |
| 행정·사회복지 | 10 | 8 | | | | 2 | |
| 행정·사서 | 4 | | | | | 4 | |
| 행정·공업 | 3 | 1 | 1 | | 1 | | |
| 행정·녹지 | 2 | | | | | 2 | |
| 행정·보건 | 3 | 2 | 1 | | | | |
| 행정·시설 | 24 | 18 | | | 6 | | |
| 행정·방재안전 | *4* | *4* | | | | | |
| 행정·방송통신 | 2 | 1 | | | 1 | | |
| 세무·전산 | 1 | 1 | | | | | |
| 전산·방송통신 | 4 | 4 | | | | | |
| 공업·환경 | 5 | 5 | | | | | |
| 공업·시설 | 23 | 4 | | | | 19 | |

| 직급별 \ 기관별 | 총 계 | 본 청 | 의 회 사무처 | 직속기관 | 경제자유구 역 청 | 사업소 | 합 의 제 행정기관 |
|---|---|---|---|---|---|---|---|
| 공업·방송통신 | 1 | | | | | 1 | |
| 농업·수의 | 2 | 1 | | 1 | | | |
| 녹지·환경 | 1 | | | | | 1 | |
| 녹지·시설 | 3 | 2 | | | | 1 | |
| 수의·수의연구 | *6* | 2 | | *3* | | 1 | |
| 수의·수의연구·보건연구 | *1* | | | *1* | | | |
| 해양수산·환경 | 2 | 2 | | | | | |
| 해양수산·시설 | 1 | 1 | | | | | |
| 해양수산·어촌지도 | 3 | | | | | 3 | |
| 보건·간호 | 6 | 3 | | | 1 | 2 | |
| 보건·환경 | *2* | *2* | | | | | |
| 환경·시설 | 1 | 1 | | | | | |
| 시설·방송통신 | 1 | | | | | 1 | |
| 시설·방재안전 | 1 | 1 | | | | | |
| 보건·약무 | 1 | 1 | | | | | |
| 간호·건축 | 1 | 1 | | | | | |
| 행정·시설·방재안전 | 4 | 4 | | | | | |
| 보건·의료기술·간호 | 1 | 1 | | | | | |
| 운전 | 34 | 11 | 2 | 7 | | 13 | 1 |
| 위생 | 1 | | | | | 1 | |
| 속기 | 2 | | 2 | | | | |
| 방호 | 4 | | | 1 | | 3 | |
| 전기운영 | *18* | 2 | | 1 | | *15* | |
| 기계운영 | *26* | 1 | | | | *25* | |
| 열관리운영 | 1 | | | 1 | | | |
| 화공운영 | *4* | | | | | *4* | |
| 보건운영 | 1 | | | 1 | | | |
| 사무운영 | 47 | 19 | | 1 | 2 | 24 | 1 |
| 행정(임시정원) | 3 | 3 | | | | | |
| 전산(임시정원) | 1 | 1 | | | | | |
| 세무(임시정원) | 1 | 1 | | | | | |
| 보건(임시정원) | 3 | 3 | | | | | |
| 간호(임시정원) | 1 | 1 | | | | | |
| 공업·보건·환경(임시정원) | 1 | 1 | | | | | |
| 8급 | *291* | 61 | 5 | 13 | 12 | *200* | |
| 행정 | 77 | 17 | 1 | 3 | 8 | 48 | |

| 직급별 \ 기관별 | 총 계 | 본 청 | 의 회 사무처 | 직속기관 | 경제자유구 역 청 | 사업소 | 합 의 제 행정기관 |
|---|---|---|---|---|---|---|---|
| 세무 | 2 | 2 | | | | | |
| 전산 | 1 | 1 | | | | | |
| 사회복지 | 2 | 2 | | | | | |
| 사서 | 5 | | | | | 5 | |
| 공업 | *80* | 2 | | 1 | 3 | *74* | |
| 농업 | 1 | 1 | | | | | |
| 녹지 | 2 | | | | | 2 | |
| 해양수산 | 3 | 3 | | | | | |
| 보건 | 5 | 4 | | 1 | | | |
| 간호 | 1 | 1 | | | | | |
| 환경 | 5 | 5 | | | | | |
| 시설 | 48 | 15 | | | 1 | 32 | |
| 방재안전 | 1 | 1 | | | | | |
| 방송통신 | 1 | 1 | | | | | |
| 행정·사서 | 5 | | | | | 5 | |
| 행정·보건 | 1 | 1 | | | | | |
| 행정·환경 | 1 | 1 | | | | | |
| 공업·시설 | 1 | | | | | 1 | |
| 녹지·시설 | 1 | 1 | | | | | |
| 녹지·녹지연구 | 1 | | | | | 1 | |
| 보건·간호 | 2 | 2 | | | | | |
| 보건·환경 | 1 | 1 | | | | | |
| 운전 | 8 | | | 6 | | 2 | |
| 위생 | 1 | | | 1 | | | |
| 속기 | 4 | | 4 | | | | |
| 시설관리 | 26 | | | | | 26 | |
| 농림운영 | 1 | | | | | 1 | |
| 사무운영 | 4 | | | 1 | | 3 | |
| 9급 | *39* | 2 | | | | *35* | 2 |
| 행정 | 4 | 2 | | | | | 2 |
| 사서 | 1 | | | | | 1 | |
| 공업 | 1 | | | | | 1 | |
| 시설 | 2 | | | | | 2 | |
| 시설관리 | *31* | | | | | *31* | |
| 전문경력관 소계 | 7 | 2 | 1 | | | 4 | |
| 나군 | 6 | 1 | 1 | | | 4 | |

| 직급별 \ 기관별 | 총 계 | 본 청 | 의 회 사무처 | 직속기관 | 경제자유구 역 청 | 사업소 | 합 의 제 행정기관 |
|---|---|---|---|---|---|---|---|
| 사진기사 | 1 | | 1 | | | | |
| 나병관리사 | 1 | 1 | | | | | |
| 무대장치사 | 2 | | | | | 2 | |
| 음향기사 | 1 | | | | | 1 | |
| 조명기사 | 1 | | | | | 1 | |
| 다군 | 1 | 1 | | | | | |
| 사진기사 | 1 | 1 | | | | | |
| 특정직 소계 | 3,405 | 232 | | 3,173 | | | |
| 소방직 | 3,405 | 232 | | 3,173 | | | |
| 소방정 | 20 | 8 | | 12 | | | |
| 소방령 | 98 | 29 | | 69 | | | |
| 소방경 | 251 | 34 | | 217 | | | |
| 소방위 | 371 | 46 | | 325 | | | |
| 소방장 | 469 | 53 | | 416 | | | |
| 소방교 | 823 | 43 | | 780 | | | |
| 소방사 | 1,373 | 19 | | 1,354 | | | |
| 별정직 소계 | 18 | 11 | 7 | | | | |
| 1급 | 1 | 1 | | | | | |
| 관리관·별정 | 1 | 1 | | | | | |
| 4급 | 8 | 2 | 6 | | | | |
| 별정 | 2 | 2 | | | | | |
| 서기관·별정 | 5 | | 5 | | | | |
| 서기관·기술서기관·별정 | 1 | | 1 | | | | |
| 5급 | 3 | 3 | | | | | |
| 비서관 | 2 | 2 | | | | | |
| 국제관계대사 | 1 | 1 | | | | | |
| 6급 | 3 | 3 | | | | | |
| 비서 | 3 | 3 | | | | | |
| 7급 | 3 | 2 | 1 | | | | |
| 비서 | 3 | 2 | 1 | | | | |
| 연구직 소계 | *198* | 9 | | *135* | | 54 | |
| 연구관 | 33 | | | 25 | | 8 | |
| 수의연구 | 2 | | | 2 | | | |
| 해양수산연구 | 1 | | | | | 1 | |
| 보건연구 | 10 | | | 10 | | | |
| 환경연구 | 11 | | | 11 | | | |

| 직급별 \ 기관별 | 총 계 | 본 청 | 의 회 사무처 | 직속기관 | 경제자유구 역 청 | 사업소 | 합 의 제 행정기관 |
|---|---|---|---|---|---|---|---|
| 학예연구 | 3 | | | | | 3 | |
| 공업연구·환경연구 | 1 | | | | | 1 | |
| 보건연구·환경연구 | 4 | | | 1 | | 3 | |
| 보건·환경·수의연구 | 1 | | | 1 | | | |
| 연구사 | *165* | 9 | | *110* | | 46 | |
| 기록연구 | 2 | 2 | | | | | |
| 녹지연구 | 1 | | | | | 1 | |
| 수의연구 | 9 | | | 9 | | | |
| 해양수산연구 | 7 | | | | | 7 | |
| 보건연구 | 48 | | | 42 | | 6 | |
| 공업연구 | 2 | | | | | 2 | |
| 환경연구 | *62* | | | *53* | | 9 | |
| 학예연구 | 23 | 6 | | | | 17 | |
| 공업연구·환경연구 | 3 | | | | | 3 | |
| 농업연구·수의연구 | 2 | | | 2 | | | |
| 보건연구·환경연구 | 4 | | | 4 | | | |
| 학예연구·편사연구 | 1 | 1 | | | | | |
| 해양수산연구·어촌지도 | 1 | | | | | 1 | |
| 지도직 소계 | 29 | | | 28 | | 1 | |
| 지도관 | 5 | | | 5 | | | |
| 농촌지도 | 5 | | | 5 | | | |
| 지도사 | 24 | | | 23 | | 1 | |
| 농촌지도 | 23 | | | 23 | | | |
| 어촌지도 | 1 | | | | | 1 | |

[별표 2] 시본청에 두는 공무원의 실·국·본부별 직급별 정원

| 구 분 | 직 종 | 직 급 | 정 원 | 직 렬 별 내 역 |
|---|---|---|---|---|
| 시정혁신 담 당 관 | 계 | | 17 | |
| | 일반직 | 4급 | 1 | 서기관1 |
| | | 5급 | 3 | 행정3 |
| | | 6급 | 7 | 행정7 |
| | | 7급 | 6 | 행정6 |
| 글로벌도시 기 획 단 | 계 | | 8 | |
| | 일반직 | 4급 | 1 | 서기관1 |
| | | 5급 | 2 | 행정2 |
| | | 6급 | 3 | 행정2, 행정·시설1 |
| | | 7급 | 2 | 행정1, 행정·시설1 |
| 제물포 르네상스 기 획 단 | 계 | | 23 | |
| | 일반직 | 4급 | 1 | 기술서기관1 |
| | | 5급 | 5 | 행정1, 시설3, 행정·시설1 |
| | | 6급 | 7 | 행정1, 시설5, 행정·시설1 |
| | | 7급 | 7 | 행정2, 시설4, 녹지·시설1 |
| | | 8급 | 3 | 시설3 |
| 감 사 관 | 계 | | 51 | |
| | 일반직 | 3-4급 | 1 | 부이사관·서기관1 |
| | | 5급 | 8 | 행정6, 시설1, 행정·시설1 |
| | | 6급 | 35 | 행정21, 세무1, 전산1, 공업1, 녹지1, 환경1, 시설7, 행정·사회복지1, 보건·보건연구1 |
| | | 7급 | 7 | 행정6, 행정·사회복지1 |
| 홍보담당관 | 계 | | 22 | |
| | 일반직 | 4급 | 1 | 서기관1 |
| | | 5급 | 3 | 행정3 |
| | | 6급 | 5 | 행정5 |
| | | 7급 | 12 | 행정9, 공업1, 전기운영1, 기계운영1 |
| | 전문경력 | 다군 | 1 | 사진기사1 |
| 도시브랜드 담 당 관 | 계 | | 19 | |
| | 일반직 | 4급 | 1 | 서기관1 |
| | | 5급 | 4 | 행정4 |
| | | 6급 | 6 | 행정5, 사무운영1 |
| | | 7급 | 8 | 행정7, 전산1 |

| 구 분 | 직 종 | 직 급 | 정 원 | 직 렬 별 내 역 |
|---|---|---|---|---|
| 도시디자인단 | 계 | | 17 | |
| | 일반직 | 4급 | 1 | 서기관1 |
| | | 5급 | 3 | 시설3 |
| | | 6급 | 4 | 공업1, 시설3 |
| | | 7급 | 9 | 행정2, 공업1, 시설5, 녹지·시설1 |
| 시민소통 담당관 | 계 | | 22 | |
| | 일반직 | 4급 | 1 | 서기관1 |
| | | 5급 | 5 | 행정5 |
| | | 6급 | 10 | 행정8, 시설1, 행정·시설1 |
| | | 7급 | 6 | 행정5, 사무운영1 |
| 청년정책 담당관 | 계 | | 15 | |
| | 일반직 | 4급 | 1 | 서기관1 |
| | | 5급 | 4 | 행정4 |
| | | 6급 | 6 | 행정6 |
| | | 7급 | 4 | 행정4 |
| 기획조정실 | 계 | | 364 | |
| | 일반직 | 3급 | 1 | 부이사관1 |
| | | 3-4급 | 1 | 부이사관·서기관1 |
| | | 4급 | 13 | 서기관8, 서기관·기술서기관5 |
| | | 5급 | 57 | 행정48, 시설2, 방송통신2, 행정·시설2, 행정·방송통신2, 행정·운전1 |
| | | 6급 | 173 | 행정83, 세무28, 전산28, 시설11, 방송통신4, 행정·세무4, 행정·전산3, 행정·시설5, 운전5, 통신운영1, 사무운영1 |
| | | 7급 | 115 | 행정54, 세무10, 전산17, 시설5, 방송통신5, 행정·세무2, 행정·전산3, 행정·보건1, 행정·시설1, 세무·전산1, 전산·방송통신1, 운전11, 사무운영4 |
| | | 8급 | 3 | 행정1, 세무2 |
| | 별정직 | 5급 | 1 | 국제관계대사1 |

| 구 분 | 직 종 | 직 급 | 정 원 | 직 렬 별 내 역 |
|---|---|---|---|---|
| 시민안전본부 | 계 | | 125 | |
| | 일반직 | 2-3급 | 1 | 이사관·부이사관1 |
| | | 4급 | 6 | 서기관2, 서기관·기술서기관4 |
| | | 5급 | 21 | 행정10, 공업1, 시설1, 방송통신1, 행정·시설2, 행정·방재안전2, 보건·환경1, 행정·공업·시설1, 행정·시설·방재안전1, 행정·보건(임시정원)1 |
| | | 6급 | *48* | 행정14, 전산5, 공업3, 농업2, 수의1, 해양수산2, 보건2, 환경3, 시설3, *방송통신4*, 행정·전산1, 행정·공업1, 행정·환경1, 행정·시설1, 전산·방송통신1, 공업·시설1, 시설·방재안전2, 행정(임시정원)1 |
| | | 7급 | *43* | *행정9*, 전산1, 공업1, 보건1, 시설8, 방재안전2, *방송통신4*, *행정·방재안전4*, 전산·방송통신2, 공업·환경1, 시설·방재안전1, 보건·약무1, 행정·시설·방재안전4, 행정(임시정원)2, 전산(임시정원)1, 공업·보건·환경(임시정원)1 |
| | | 8급 | 2 | 방재안전1, 방송통신1 |
| | 특정직 | | 4 | 소방경1, 소방위1, 소방장2 |
| *경제산업 본부* | 계 | | *182* | |
| | 일반직 | 2-3급 | 1 | 이사관·부이사관1 |
| | | 4급 | 8 | 서기관4, 서기관·기술서기관4 |
| | | 5급 | *39* | *행정24*, 공업4, 농업4, 행정·공업2, 행정·농업1, 공업·시설1, 농업·수의2, 수의·수의연구1 |
| | | 6급 | *76* | *행정42*, 전산4, 공업12, 농업9, 수의2, 시설4, 행정·농업1, 행정·시설1, *행정·공업·시설1* |
| | | 7급 | *54* | *행정32*, 공업6, 농업5, 수의1, *간호1*, *시설3*, 행정·시설2, 공업·시설1, 농업·수의1, 수의·수의연구2 |
| | | 8급 | *4* | *행정3*, 농업1 |

| 구 분 | 직 종 | 직 급 | 정 원 | 직 렬 별 내 역 |
|---|---|---|---|---|
| *건강보건국* | 계 | | *93* | |
| | 일반직 | 3급 | 1 | 부이사관1 |
| | | 4급 | *4* | 기술서기관2, *서기관·기술서기관2* |
| | | 5급 | *20* | 보건4, 간호1, 행정·보건2, 보건·간호5, 행정·보건·간호1, 공업·보건·식품위생1, 행정·보건·약무·간호1, 보건·의료기술·약무·간호1, 보건·의무·약무·간호1, 행정(임시정원)1, 보건·간호(임시정원)1, 의무(임시정원)1 |
| | | 6급 | *36* | *행정1*, 보건15, 간호5, 행정·보건1, 보건·간호3, 보건·의료기술·간호1, 보건·약무·간호1, 보건·의무·약무·간호1, 보건(임시정원)2, 간호(임시정원)1, 보건·간호(임시정원)3, 의료기술·약무(임시정원)1, 보건·의료기술·간호(임시정원)1 |
| | | 7급 | *24* | *행정3*, 보건6, 간호3, 행정·보건1, 보건·간호3, 간호·건축1, 보건·의료기술·간호1, 행정(임시정원)1, 세무(임시정원)1, 보건(임시정원)3, 간호(임시정원)1 |
| | | 8급 | 7 | 보건4, 간호1, 보건·간호2 |
| | 전문경력 | 나군 | 1 | 나병관리사1 |
| 환경국 | 계 | | *126* | |
| | 일반직 | 3급 | 1 | 부이사관1 |
| | | 4급 | 5 | 기술서기관2, 서기관·기술서기관3 |
| | | 5급 | 21 | 행정1, 환경8, 시설2, 행정·환경2, 행정·시설1, 공업·환경2, 환경·시설1, 행정·공업·환경2, 행정·녹지·환경1, 공업·보건·환경1 |
| | | 6급 | 44 | 행정8, 전산1, 공업6, 환경16, 시설5, 행정·공업1, 행정·환경1, 녹지·환경1, 보건·환경1, 환경·시설1, 공업·보건·환경2, 기계운영1 |
| | | 7급 | *44* | 행정9, 공업6, 환경15, 시설5, 공업·환경3, *보건·환경2*, 사무운영4 |
| | | 8급 | 11 | 행정2, 공업1, 환경5, 시설1, 행정·환경1, 보건·환경1 |

| 구 분 | 직 종 | 직 급 | 정 원 | 직 렬 별 내 역 |
|---|---|---|---|---|
| 자원순환 에너지본부 | 계 | | 60 | |
| | 일반직 | 3급 | 1 | 부이사관1 |
| | | 4급 | 4 | 서기관·기술서기관4 |
| | | 5급 | 13 | 행정2, 공업4, 행정·공업2, 행정·환경3, 환경·시설1, 공업·환경·시설1 |
| | | 6급 | 27 | 행정6, 공업10, 환경4, 시설2, 행정·환경3, 보건·환경1, 환경·시설1 |
| | | 7급 | 15 | 행정4, 공업9, 환경2 |
| 교통건설국 | 계 | | 180 | |
| | 일반직 | 3급 | 1 | 부이사관1 |
| | | 4급 | 8 | 서기관3, 기술서기관2, 서기관·기술서기관3 |
| | | 5급 | 32 | 행정12, 공업1, 시설12, 방송통신2, 행정·시설3, 공업·시설1, 행정·공업·방송통신1 |
| | | 6급 | 79 | 행정27, 세무1, 전산3, 공업5, 시설29, 방송통신4, 행정·공업1, 행정·시설4, 전산·방송통신2, 공업·시설1, 행정·전산·시설1, 전기운영1 |
| | | 7급 | 56 | 행정17, 전산1, 공업5, 시설19, 방송통신5, 행정·시설1, 공업·시설2, 전기운영1, 사무운영5 |
| | | 8급 | 4 | 행정3, 시설1 |
| 도시계획국 | 계 | | 153 | |
| | 일반직 | 3급 | 1 | 부이사관1 |
| | | 4급 | 7 | 기술서기관1, 서기관·기술서기관6 |
| | | 5급 | 34 | 시설27, 행정·시설7 |
| | | 6급 | 56 | 행정5, 전산1, 녹지1, 시설45, 행정·시설3, 녹지·환경1 |
| | | 7급 | 46 | 행정6, 전산1, 사회복지1, 시설31, 행정·시설5, 공업·환경1, 환경·시설1 |
| | | 8급 | 9 | 시설9 |

| 구 분 | 직 종 | 직 급 | 정 원 | 직 렬 별 내 역 |
|---|---|---|---|---|
| 도시재생 녹지국 | 계 | | 97 | |
| | 일반직 | 3급 | 1 | 부이사관1 |
| | | 4급 | 5 | 기술서기관3, 서기관·기술서기관2 |
| | | 5급 | 20 | 행정1, 녹지6, 시설11, 공업·시설1, 녹지·시설1 |
| | | 6급 | 32 | 행정1, 전산1, 공업1, 녹지9, 시설19, 사무운영1 |
| | | 7급 | 37 | 행정4, 녹지12, 시설19, 공업·시설1, 사무운영1 |
| | | 8급 | 2 | 시설1, 녹지·시설1 |
| 해양항공국 | 계 | | 119 | |
| | 일반직 | 3급 | 1 | 부이사관1 |
| | | 4급 | 7 | 서기관2, 기술서기관1, 서기관·기술서기관4 |
| | | 5급 | 22 | 행정9, 해양수산4, 시설3, 행정·시설3, 녹지·환경1, 행정·해양수산·환경2 |
| | | 6급 | 50 | 행정19, 전산1, 공업1, 해양수산16, 환경1, 시설8, 녹지·환경1, 해양수산·환경2, 해양수산·어촌지도1 |
| | | 7급 | 35 | 행정13, 해양수산9, 시설7, 행정·시설3, 해양수산·환경2, 해양수산·시설1 |
| | | 8급 | 4 | 행정1, 해양수산3 |
| 행정국 | 계 | | 158 | |
| | 정무직 | 정무 | 1 | 시장1 |
| | 일반직 | 3급 | 1 | 부이사관1 |
| | | 4급 | 7 | 서기관5, 서기관·기술서기관2 |
| | | 5급 | 24 | 행정21, 행정·시설2, 공업·시설1 |
| | | 6급 | 59 | 행정40, 전산2, 사서1, 공업1, 간호1, 시설5, 방송통신1, 행정·사회복지1, 위생1, 방호3, 사무운영3 |
| | | 7급 | 45 | 행정30, 전산3, 공업2, 시설1, 행정·전산1, 행정·공업1, 행정·시설2, 행정·방송통신1, 사무운영4 |
| | | 8급 | 7 | 행정5, 전산1, 공업1 |
| | | 9급 | 2 | 행정2 |
| | 별정직 | 1급 | 1 | 관리관·별정1 |
| | | 4급 | 2 | 별정2 |
| | | 5급 | 2 | 비서관2 |
| | | 6급 | 3 | 비서3 |
| | | 7급 | 2 | 비서2 |
| | 연구직 | 연구사 | 2 | 기록연구2 |

| 구 분 | 직 종 | 직 급 | 정 원 | 직 렬 별 내 역 |
|---|---|---|---|---|
| 문화관광 체육국 | 계 | | 142 | |
| | 일반직 | 3급 | 1 | 부이사관1 |
| | | 4급 | 6 | 서기관4, 서기관·기술서기관2 |
| | | 5급 | 27 | 행정20, 시설2, 행정·사서1, 행정·보건1, 행정·시설2, 행정·학예연구1 |
| | | 6급 | 54 | 행정37, 공업1, 녹지1, 보건1, 시설9, 행정·사서1, 행정·시설3, 사무운영1 |
| | | 7급 | 47 | 행정37, 전산1, 사서1, 공업1, 시설5, 행정·시설2 |
| | 연구직 | 연구사 | 7 | 학예연구6, 학예연구·편사연구1 |
| 복지국 | 계 | | 86 | |
| | 일반직 | 3급 | 1 | 부이사관1 |
| | | 4급 | 5 | 서기관5 |
| | | 5급 | 17 | 행정11, 행정·사회복지6 |
| | | 6급 | 37 | 행정21, 사회복지7, 시설1, 행정·사회복지8 |
| | | 7급 | 23 | 행정10, 사회복지7, 시설2, 행정·사회복지4 |
| | | 8급 | 3 | 행정2, 사회복지1 |
| 여성가족국 | 계 | | 91 | |
| | 일반직 | 3급 | 1 | 부이사관1 |
| | | 4급 | 5 | 서기관5 |
| | | 5급 | 19 | 행정13,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3, 보건·간호1 |
| | | 6급 | 37 | 행정23, 사회복지5, 시설1, 행정·사회복지4, 행정·보건1, 행정·간호1, 보건·간호1, 행정·보건·간호1 |
| | | 7급 | 27 | 행정13, 사회복지7, 보건2, 행정·전산1, 행정·사회복지3, 행정·시설1 |
| | | 8급 | 2 | 사회복지1, 행정·보건1 |
| 소방본부 | 계 | | 230 | |
| | 일반직 | 6급 | 1 | 전산1 |
| | | 7급 | 1 | 전산·방송통신1 |
| | 특정직 | | 228 | 소방정8, 소방령29, 소방경33, 소방위45, 소방장51, 소방교43, 소방사19 |

[별표 3] 의회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 구 분 | 직 종 | 직 급 | 정 원 | 직 렬 별 내 역 |
|---|---|---|---|---|
| 의회사무처 | 계 | | 118 | |
| | 일반직 | 2-3급 | 1 | 이사관·부이사관1 |
| | | 4급 | 3 | 서기관3 |
| | | 5급 | 19 | 행정15, 시설2, 행정·속기1, 행정·공업·시설1 |
| | | 6급 | 51 | 행정37, 전산2, 환경1, 시설3, 방송통신1, 행정·사회복지1, 공업·시설1, 운전2, 속기1, 방호1, 사무운영1 |
| | | 7급 | 31 | 행정21, 사서1, 시설1, 방송통신1, 행정·전산1, 행정·공업1, 행정·보건1, 운전2, 속기2 |
| | | 8급 | 5 | 행정1, 속기4 |
| | 전문경력 | 나군 | 1 | 사진기사1 |
| | 별정직 | 4급 | 6 | 서기관·별정5, 서기관·기술서기관·별정1 |
| | | 7급 | 1 | 비서1 |

[별표 4] 직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 구 분 | 직 종 | 직 급 | 정 원 | 직 렬 별 내 역 |
|---|---|---|---|---|
| 인재개발원 | 계 | | 36 | |
| | 일반직 | 3급 | 1 | 부이사관1 |
| | | 4급 | 3 | 서기관2, 서기관·기술서기관1 |
| | | 5급 | 6 | 행정5, 시설1 |
| | | 6급 | 8 | 행정5, 전산1, 간호조무1, 사무운영1 |
| | | 7급 | 14 | 행정6, 전산1, 공업2, 시설1, 운전1, 방호1, 전기운영1, 사무운영1 |
| | | 8급 | 4 | 행정3, 위생1 |
| 보 건 환 경 연 구 원 | 계 | | *177* | |
| | 일반직 | 4급 | 1 | 기술서기관·수의연구관1 |
| | | 5급 | 4 | 행정1, 수의·수의연구3 |
| | | 6급 | 9 | 행정2, 전산1, 수의3, 수의·수의연구1, 운전1, 위생1 |
| | | 7급 | 25 | 행정4, 전산1, 공업3, 수의2, 보건2, 방송통신1, 농업·수의1, *수의·수의연구3*, *수의·수의연구·보건연구1*, 운전5, 열관리운영1, 보건운영1 |
| | | 8급 | 3 | 공업1, 보건1, 사무운영1 |
| | 연구직 | 연구관 | 25 | 수의연구2, 보건연구10, 환경연구11, 보건연구·환경연구1, 보건·환경·수의연구1 |
| | | 연구사 | *110* | 수의연구9, 보건연구42, *환경연구53*, 농업연구·수의연구2, 보건연구·환경연구4 |
| 농업기술센터 | 계 | | 34 | |
| | 일반직 | 6급 | 1 | 행정1 |
| | | 7급 | 4 | 행정2, 공업1, 시설1 |
| | | 8급 | 1 | 운전1 |
| | 지도직 | 지도관 | 5 | 농촌지도5 |
| | | 지도사 | 23 | 농촌지도23 |
| 중부소방서 | 계 | | 318 | |
| | 일반직 | 7급 | 1 | 운전1 |
| | | 8급 | 3 | 운전3 |
| | 특정직 | | 314 | 소방정1, 소방령6, 소방경21, 소방위34, 소방장37, 소방교87, 소방사128 |

| 구 분 | 직 종 | 직 급 | 정 원 | 직 렬 별 내 역 |
|---|---|---|---|---|
| 남동소방서 | 계 | | 289 | |
| | 특정직 | | 289 | 소방정1, 소방령6, 소방경19, 소방위23, 소방장38, 소방교72, 소방사130 |
| 부평소방서 | 계 | | 336 | |
| | 특정직 | | 336 | 소방정1, 소방령6, 소방경20, 소방위26, 소방장41, 소방교87, 소방사155 |
| 서부소방서 | 계 | | 467 | |
| | 특정직 | | 467 | 소방정1, 소방령6, 소방경25, 소방위43, 소방장66, 소방교114, 소방사212 |
| 공단소방서 | 계 | | 310 | |
| | 특정직 | | 310 | 소방정1, 소방령6, 소방경20, 소방위26, 소방장35, 소방교83, 소방사139 |
| 계양소방서 | 계 | | 247 | |
| | 특정직 | | 247 | 소방정1, 소방령6, 소방경18, 소방위22, 소방장29, 소방교64, 소방사107 |
| 미추홀소방서 | 계 | | 313 | |
| | 특정직 | | 313 | 소방정1, 소방령6, 소방경20, 소방위26, 소방장36, 소방교80, 소방사144 |
| 강화소방서 | 계 | | 285 | |
| | 특정직 | | 285 | 소방정1, 소방령6, 소방경17, 소방위39, 소방장38, 소방교68, 소방사116 |
| 영종소방서 | 계 | | 257 | |
| | 일반직 | 8급 | 1 | 운전1 |
| | 특정직 | | 256 | 소방정1, 소방령6, 소방경18, 소방위28, 소방장30, 소방교54, 소방사119 |
| 송도소방서 | 계 | | 232 | |
| | 일반직 | 8급 | 1 | 운전1 |
| | 특정직 | | 231 | 소방정1, 소방령6, 소방경18, 소방위29, 소방장39, 소방교49, 소방사89 |
| 소방학교 | 계 | | 31 | |
| | 특정직 | | 31 | 소방령3, 소방경7, 소방위10, 소방장4, 소방교4, 소방사3 |
| 119특수 대응단 | 계 | | 58 | |
| | 특정직 | | 58 | 소방정1, 소방령3, 소방경8, 소방위12, 소방장13, 소방교13, 소방사8 |

| 구 분 | 직 종 | 직 급 | 정 원 | 직 렬 별 내 역 |
|---|---|---|---|---|
| 인천국민 안전체험관 | 계 | | 36 | |
| | 특정직 | | 36 | 소방정1, 소방령3, 소방경6, 소방위7, 소방장10, 소방교5, 소방사4 |

[별표 6] 사업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 구 분 | 직 종 | 직 급 | 정 원 | 직 렬 별 내 역 |
|---|---|---|---|---|
| 상 수 도 사 업 본 부 | 계 | | 645 | |
| | 일반직 | 3급 | 1 | 부이사관1 |
| | | 4급 | 14 | 서기관1, 기술서기관3, 서기관·기술서기관10 |
| | | 5급 | 56 | 행정19, 공업17, 시설8, 행정·공업5, 공업·시설7 |
| | | 6급 | *153* | 행정27, 세무1, 전산5, *공업41*, 시설17, 방송통신1, 행정·공업1, 공업·시설16, 운전1, 전기운영11, 기계운영25, 사무운영7 |
| | | 7급 | *215* | 행정38, 세무1, 전산4, *공업61*, 환경4, 시설20, 방송통신2, 공업·시설18, 보건·간호1, 운전8, 방호2, *전기운영14*, *기계운영22*, *화공운영4*, 사무운영16 |
| | | 8급 | *149* | 행정28, *공업70*, 시설23, 공업·시설1, 시설관리26, 사무운영1 |
| | | 9급 | *33* | 시설2, *시설관리31* |
| | 연구직 | 연구관 | 4 | 공업연구·환경연구1, 보건연구·환경연구3 |
| | | 연구사 | 20 | 보건연구6, 공업연구2, 환경연구9, 공업연구·환경연구3 |
| 도 시 철 도 건 설 본 부 | 계 | | 94 | |
| | 일반직 | 3급 | 1 | 부이사관1 |
| | | 4급 | 4 | 서기관1, 기술서기관3 |
| | | 5급 | 13 | 행정2, 공업3, 시설6, 방송통신1, 공업·시설1 |
| | | 6급 | 38 | 행정5, 공업13, 시설16, 방송통신3, 운전1 |
| | | 7급 | 32 | 행정6, 공업7, 시설15, 방송통신3, 공업·방송통신1 |
| | | 8급 | 6 | 행정1, 공업1, 시설4 |

| 구 분 | 직 종 | 직 급 | 정 원 | 직 렬 별 내 역 |
|---|---|---|---|---|
| 종합건설본부 | 계 | | *172* | |
| | 일반직 | 3급 | 1 | 부이사관1 |
| | | 4급 | 4 | 서기관1, 기술서기관3 |
| | | 5급 | *20* | 행정4, 공업2, 녹지1, *시설12*, 행정·공업1 |
| | | 6급 | *51* | 행정8, 공업8, 녹지1, *시설21*, 방송통신1, 운전2, 토목운영1, 기계운영9 |
| | | 7급 | 83 | 행정16, *공업22*, 녹지2, *시설30*, 방송통신1, 시설·방송통신1, 운전5, 기계운영3, 사무운영3 |
| | | 8급 | 13 | 행정6, 공업1, 시설5, 운전1 |
| 여성복지관 | 계 | | 15 | |
| | 일반직 | 4급 | 1 | 서기관1 |
| | | 5급 | 2 | 행정1, 행정·사회복지1 |
| | | 6급 | 3 | 행정3 |
| | | 7급 | 9 | 행정3, 전산1, 사회복지2, 공업2, 행정·사회복지1 |
| 여성의광장 | 계 | | 11 | |
| | 일반직 | 4급 | 1 | 서기관1 |
| | | 5급 | 1 | 행정1 |
| | | 6급 | 1 | 행정1 |
| | | 7급 | 7 | 행정5, 전산1, 공업1 |
| | | 9급 | 1 | 공업1 |
| 문화예술회관 | 계 | | 38 | |
| | 일반직 | 4급 | 1 | 서기관1 |
| | | 5급 | 3 | 행정2, 행정·공업1 |
| | | 6급 | *10* | 행정4, 방송통신1, 공업·시설1, *통신운영2*, 전기운영2 |
| | | 7급 | *18* | 행정5, 전산1, 공업9, 시설1, 보건·간호1, 사무운영1 |
| | | 8급 | 2 | 행정2 |
| | 전문경력 | 나군 | 4 | 무대장치사2, 음향기사1, 조명기사1 |

| 구 분 | 직 종 | 직 급 | 정 원 | 직 렬 별 내 역 |
|---|---|---|---|---|
| 인천대공원 사 업 소 | 계 | | 47 | |
| | 일반직 | 4급 | 1 | 서기관·기술서기관1 |
| | | 5급 | 6 | 행정2, 녹지2, 녹지·녹지연구1, 행정·녹지·환경1 |
| | | 6급 | 12 | 행정1, 공업2, 녹지3, 행정·녹지1, 녹지·시설1, 녹지·녹지연구2, 전기운영1, 열관리운영1 |
| | | 7급 | 21 | 행정4, 공업5, 농업1, 녹지4, 시설2, 행정·녹지1, 수의·수의연구1, 위생1, 전기운영1, 사무운영1 |
| | | 8급 | 6 | 행정3, 공업1, 녹지1, 녹지·녹지연구1 |
| | 연구직 | 연구사 | 1 | 녹지연구1 |
| 월미공원 사 업 소 | 계 | | 22 | |
| | 일반직 | 4급 | 1 | 기술서기관1 |
| | | 5급 | 3 | 행정1, 녹지1, 행정·녹지1 |
| | | 6급 | 3 | 행정1, 녹지2 |
| | | 7급 | 14 | 행정3, 공업4, 녹지4, 시설2, 녹지·환경1 |
| | | 8급 | 1 | 행정1 |
| 계양공원 사 업 소 | 계 | | 22 | |
| | 일반직 | 4급 | 1 | 서기관·기술서기관1 |
| | | 5급 | 4 | 행정1, 녹지3 |
| | | 6급 | 5 | 녹지3, 행정·녹지1, 공업·시설1 |
| | | 7급 | 10 | 공업1, 녹지5, 시설1, 행정·녹지1, 녹지·시설1, 사무운영1 |
| | | 8급 | 2 | 녹지1, 농림운영1 |
| 미 추 홀 도 서 관 | 계 | | *57* | |
| | 일반직 | 4급 | 1 | 서기관1 |
| | | 5급 | 7 | 행정1, 사서1, 행정·사서5 |
| | | 6급 | 13 | 행정2, 전산1, 사서6, 공업1, 행정·사서2, 사무운영1 |
| | | 7급 | *22* | 행정2, 전산2, *사서11*, 공업2, 시설1, 행정·사서4 |
| | | 8급 | 13 | 사서5, 공업1, 행정·사서5, 운전1, 사무운영1 |
| | | 9급 | 1 | 사서1 |

| 구 분 | 직 종 | 직 급 | 정 원 | 직 렬 별 내 역 |
|---|---|---|---|---|
| 시립박물관 | 계 | | 41 | |
| | 일반직 | 4급 | 1 | 서기관1 |
| | | 5급 | 4 | 행정1, 행정·학예연구3 |
| | | 6급 | 3 | 행정1, 공업1, 행정·학예연구1 |
| | | 7급 | 11 | 행정4, 전산1, 공업6 |
| | | 8급 | 2 | 행정2 |
| | 연구직 | 연구관 | 3 | 학예연구3 |
| | | 연구사 | 17 | 학예연구17 |
| 남촌농축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 계 | | 20 | |
| | 일반직 | 4급 | 1 | 서기관·기술서기관1 |
| | | 5급 | 2 | 행정·농업2 |
| | | 6급 | 3 | 행정1, 농업2 |
| | | 7급 | 14 | 행정2, 공업4, 농업5, 시설1, 행정·전산1, 공업·시설1 |
| 삼산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 계 | | 15 | |
| | 일반직 | 4급 | 1 | 서기관·기술서기관1 |
| | | 5급 | 2 | 행정·농업2 |
| | | 6급 | 3 | 행정1, 농업2 |
| | | 7급 | 8 | 행정1, 전산1, 공업2, 농업3, 시설1 |
| | | 8급 | 1 | 행정1 |
| 수산자원 연구소 | 계 | | 22 | |
| | 일반직 | 4급 | 1 | 서기관·기술서기관·해양수산연구관1 |
| | | 5급 | 2 | 행정1,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1 |
| | | 6급 | 3 | 행정1, 해양수산·어촌지도1,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1 |
| | | 7급 | 5 | 행정1, 공업2, 시설1, 사무운영1 |
| | | 8급 | 2 | 행정1, 사무운영1 |
| | 연구직 | 연구관 | 1 | 해양수산연구1 |
| | | 연구사 | 8 | 해양수산연구7, 해양수산연구·어촌지도1 |
| *중앙협력본부* | 계 | | 8 | |
| | 일반직 | 4급 | 1 | 서기관1 |
| | | 5급 | 2 | 행정2 |
| | | 6급 | 3 | 행정3 |
| | | 7급 | 2 | 행정2 |

| 구 분 | 직 종 | 직 급 | 정 원 | 직 렬 별 내 역 |
|---|---|---|---|---|
| 수산기술지원센터 | 계 | | 14 | |
| | 일반직 | 4급 | 1 | 기술서기관·어촌지도관1 |
| | | 5급 | 2 | 행정·해양수산1, 해양수산·어촌지도1 |
| | | 6급 | 5 | 해양수산·어촌지도4,<br>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1 |
| | | 7급 | 5 | 공업1, 해양수산·어촌지도3, 사무운영1 |
| | 지도직 | 지도사 | 1 | 어촌지도1 |
| 서부여성회관 | 계 | | 14 | |
| | 일반직 | 4급 | 1 | 서기관1 |
| | | 5급 | 1 | 행정1 |
| | | 6급 | 2 | 행정2 |
| | | 7급 | 7 | 행정2, 전산1, 사회복지1, 공업1, 시설1,<br>방호1 |
| | | 8급 | 3 | 행정3 |
| 아동복지관 | 계 | | 8 | |
| | 일반직 | 4급 | 1 | 서기관1 |
| | | 5급 | 1 | 행정·사회복지1 |
| | | 6급 | 3 | 행정2, 행정·사회복지1 |
| | | 7급 | 3 | 행정2, 행정·사회복지1 |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⑤ (생 략)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 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 ⑤ (생 략)

기 타

인천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공고 제2022-33호

# 인천광역시교육청 개방형직위(정책기획조정관) 공개모집 재공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정책기획조정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7월 18일

**인천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 1. 개 요

가. 임용예정 직위, 직급, 인원 및 주요 업무

| 임용예정 직 위 | 임용가능 직 급 | 임용 인원 | 주요 업무 내용 |
|---|---|---|---|
| 정책기획 조정관 | 지방부이사관 또는 일반임기제 공무원 (3급 상당) | 1명 |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관리<br>◦ 공립학교 학교기본운영지원비 관리 지도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br>◦ 중·단기 지방교육재정운영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br>◦ 지방교육재정 집행관리 계획 수립·시행<br>◦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br>◦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br>◦ 학생교육복지 정책을 위한 행·재정체제 강화 기본계획 수립·추진<br>◦ 학생교육복지 관련 대외협력 강화 및 민간참여 활성화 계획 수립·추진<br>◦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br>◦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 지원<br>◦ 방과후학교 지원(자유수강권, 보육료 지원, 초등학교돌봄교실 운영, 농어촌방과후학교 운영)<br>◦ 누리과정지원비 편성 및 관리<br>◦ 교과용도서 무상지원(도서 선정업무 제외)<br>◦ 저소득층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사항<br>◦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교육정보화, 중식비, 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등)<br>◦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 |

| 임용예정 직 위 | 임용가능 직 급 | 임용 인원 | 주요 업무 내용 |
|---|---|---|---|
| | | | ◦ 교육정책 기획·개발·관리·조정에 관한 사항<br>◦ 인천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조정<br>◦ 교육균형발전계획 수립·관리 및 총괄<br>◦ 학교업무 정상화 대책 등에 관한 사항<br>◦ 일하는 방식 개선 등 교육행정 혁신 및 정부혁신에 관한 사항<br>◦ 교육지표·시책 수립<br>◦ 인천교육계획의 수립·평가·조정<br>◦ 교육감 공약사항 관리<br>◦ 국정과제 추진 기획·조정<br>◦ 교육정책사업정비에 관한 사항<br>◦ 제안제도 운영<br>◦ 인천미래교육위원회 운영<br>◦ 시의회·국회 주요업무 보고<br>◦ 시·도교육감 및 부교육감회의 업무<br>◦ 교육감·부교육감 지시사항 관리<br>◦ 시·도교육청 평가<br>◦ 교육지원청 평가<br>◦ 학교평가 관리<br>◦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br>◦ 직무성과계약제 운영<br>◦ 교육의 조사연구 및 분석에 관한 사항<br>◦ 교육정책이론 및 방법 연구에 관한 사항<br>◦ 현직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br>◦ 역점정책 추진 국과협력 전략TF 구성·운영<br>◦ 업무조정 협의회 운영<br>◦ 시민정책자문단 운영<br>◦ 공모사업혁신운영제 운영<br>◦ 교육감 주요업무 보고<br>◦ 사회적가치 추진에 관한 사항<br>◦ 인천교육회복추진단 구성·운영<br>◦ 인천교육회복 종합방안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br>◦ 그 밖에 정책기획조정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 |

**나. 임용기간: 2년**(2022. 9. 1. ~ 2024. 8. 31.(예정), 채용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최초 임용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 2. 임용 신분

가.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제외)으로서 **전보 · 승진 · 전직 등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단, 임용기간 중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임용당시 민간인,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임용약정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임용기간 동안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다. 기타 신분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지침」을 따름

##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사람

나. 경력요건: 다음 경력기준 중 하나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 자 격 요 건 | 비고 |
|---|---|
| 【 관련 학과 학력 기준 】<br>◦ 석사학위 이하인자<br>-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사람<br>◦ 박사학위 소지자<br>-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사람으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사람 | 기준구분에 관계없이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경우 응시 가능 |

| 자 격 요 건 | 비고 |
|---|---|
| 【 자격증 기준 】<br>◦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사람으로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사람<br>※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7 2.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의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교육행정 직렬) 참고 | |
| 【 경력 기준 】<br>◦ 공무원경력 기준<br>-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3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br>-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br>◦ 민간경력 기준<br>-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사람으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 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br>※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 예정 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가능 | |
| ※ 관련 분야: 지방교육재정의 기획·조정·분석·평가, 교육정책 개발·기획·평가, 교육복지 및 교육비특별회계 편성·운영 관련 분야 | |

**다. 특별요건: 필수요건은 아니며 소정의 가산점 부여**

❍ 영어 구사능력: TOEFL, TOEIC, TEPS, G-TELP, FLEX 성적

❍ 정보화 활용능력: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등 공인기관 자격 소지

## 4. 시험방법

### 가. 1차 시험: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

○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고 합격·불합격만 결정하며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는 모두 합격 처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하여 7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나. 2차 시험: 면접시험(적격성 심사)

○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능력요건 및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 심사

○ (능력요건)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의 요건 심사

○ (특별요건) 특별요건에서 정한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소정의 가산점 부여

○ 배점: 능력요건 100점, 특별요건 4점

## 5. 시험일시 및 장소

### 가. 시험일정

| 구분 | 원서접수 기간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 발표 |
|---|---|---|---|---|---|
| 정책기획 조정관 | '22. 7. 26.(화) ~ 7. 28.(목) | '22. 8. 5.(금) | '22. 8. 8.(월) | '22. 8. 10.(수) | '22. 8. 19.(금) |

※ 위 시험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시험장소**: 세부 시험 장소는 개별통보 및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

## 6. 응시원서 접수

**가. 공고기간**: 2022. 7. 18.(월) ~ 7. 25.(월)

**나. 접수기간**: 2022. 7. 26.(화) 09:00 ~ 7. 28.(목), 17:00까지

※ 평일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다. 접수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 1층 총무과 인사담당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9(구월동 1137), 전화: 032-420-6513

**라. 접수방법**: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 서류를 작성·구비하여 직접 제출

(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 소인분에 한해 유효)

※ 대리접수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우편접수는 반드시 익일특급 등기우편 발송해야 하며, 발송 후 인천광역시교육청 총무과로 전화 연락(전화: 032-420-6513)**

※ 우편 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응시원서 상의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우편 발송 주소 :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인천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봉투에 "개방형직위 채용서류 재중" 명기〉

**마. 응시수수료**: 10,000원

(원서접수 시 현금으로 납부 또는 우편발송 시 동봉)

※ 접수기간 내 취소할 경우 응시수수료 반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시 응시수수료 면제

## 7.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되 수상증서, 자격증 등 **원본이 유일한 경우 원본 지참에 한해 사본 제출 가능**

○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각종 증빙 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을** 원칙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유효기간 내의 서류**여야 함

- 단, **현재 재직 중인 기관의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함

○ **제출 서류 중 불분명한 증빙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나. 제출 서류 목록

○ 1 ~ 12번: 응시자 전원 제출

○ 13 ~ 15번: 해당자에 한해 제출

| 구 분 | 내 용 |
|---|---|
| 1. 응시원서 1부<br>(별지 제1호 서식) | ◦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자필 작성 후 제출 |
| 2. 이력서 1부<br>(별지 제2호 서식) | ◦ 이력서 상 경력은 경력증명서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 (증빙 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br>◦ 공무원인 경우 이력서와 별도로 인사기록카드 제출 |
| 3. 자기소개서 1부<br>(별지 제3호 서식) | ◦ A4 용지 2매 이내 작성 |
| 4. 직무수행계획서 1부<br>(별지 제4호 서식) | ◦ 임용예정 직위에서의 업무 추진계획(방법, 일정 등)을 A4 용지 4~5매 이내로 작성 |
| 5.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br>(별도 서식 없음) | ◦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 작성<br>◦ 최근 3년간: 2020~2022년 |
| 6. 경력증명서<br>(발급 기관의 서식) |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관련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실무경력이 관련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br>◦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 7.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서)를 포함하여 제출 |
| 8. 주민등록 초본 1부 |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 9.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1부<br>(별지 제5호 서식) | ◦ 해당하는 자격요건에 표시(중복표시 가능) |
| 10.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br>(별지 제6호 서식) | ◦ 자필서명 필수 |
| 11.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 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1부<br>(별지 제7호 서식) | ◦ 자필서명 필수 |
| 12.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 경력증명서 상 경력 검증에 사용<b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 13.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성적) 증명<br>(해당자에 한함) | ◦ 영어: TOEFL, TOEIC, TEPS, G-TELP, FLEX 성적 증명<br>◦ 정보화: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등 공인기관의 자격 증명 |

| 구 분 | 내 용 |
|---|---|
| 14. 관련분야 학위·연구 논문, 수상증서 등 기타 실적 (해당자에 한함) | ◦ 관련분야 학위·연구 논문: 표지·요약(요지) 등 발췌본<br>◦ 수상증서: 훈·포장(원본 지참, 사본 제출)<br>◦ 기타 실적 증빙 자료 |
| 15. 위임장 1부 (해당자에 한함) (별지 제8호 서식) | ◦ 응시원서를 대리 접수시키는 경우 |

## 8. 보수수준

### 가.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 적용

### 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직급별 연봉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연봉 등급 | 적 용 대 상 | 상한액 (천 원) | 하한액 (천 원) |
|---|---|---|---|
| 3호 |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 73,852천원 |

❍ 위 하한액은 관련 규정 개정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9. 기 타

가. 복무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을 적용

나. 재공고: 모집공고 결과 응시자가 없는 경우, 우리 교육청 내부의 응시자만 있는 경우,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서접수 및 시험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함

다.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함

라.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마. 시험실시 결과 임용예정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바. 본 시험시행계획은 우리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사.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아. 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임용권자의 최종 결정을 통해 개방형직위에 임용됨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32-420-6513)으로 문의바람

#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아래 순서대로 편철)

1. 응시원서 ····· □ 제출 □ 미제출
2. 이력서 ····· □ 제출 □ 미제출
3. 자기소개서 ····· □ 제출 □ 미제출
4. 직무수행계획서 ····· □ 제출 □ 미제출
5.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업무추진실적) ····· □ 제출 □ 미제출
6. 경력증명서 ····· □ 제출 □ 미제출
7.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서) ····· □ 제출 □ 미제출
8. 주민등록초본 ····· □ 제출 □ 미제출
9.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 □ 제출 □ 미제출
10.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 제출 □ 미제출
11.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제출 □ 미제출
12.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제출 □ 미제출
13.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성적) 증명(해당자) ·· □ 제출 □ 미제출
14. 관련분야 논문, 수상 증서 등(해당자) ····· □ 제출 □ 미제출
15. 위임장(해당자) ····· □ 제출 □ 미제출

응시자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체크표시(√) 하시면 됩니다.

2022 년 월 일

성 명 (서명)

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 응 시 원 서

**본인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개방형직위)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2년 월 일

**인천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 | | |
|---|---|---|---|
|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 성명 | (한글) |
| 응시직급<br>(응시분야) | 3급 상당(정책기획조정관) | | (한자) |
| 주민등록<br>번 호 | - | 복수국적<br>해당여부 | |
| 주 소 | (㊞ ) | | |
| 전자우편 | | | |
| 전 화<br>(휴대전화) | | | |

㊞

# 응 시 표 (인천광역시교육청 개방형직위) 임용시험

| | | | |
|---|---|---|---|
|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 응시직급<br>(응시분야) | 3급 상당<br>(정책기획조정관) |
| 성명 | (한글) (한자) | | |
| 2022년 월 일<br>인천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 | | |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 |
|---|---|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뒷 면)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3급 상당)
- (응시분야):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정책기획조정관)

3.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자우편 · (휴대)전화: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 국적명 기재

※ 응시수수료 : 10,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 이 력 서

## □ 개인신상

| 응시번호 | | ※담당자 기재 | 응시분야 | 3급 상당(정책기획조정관) |
|---|---|---|---|---|
| 성명 | 한글 | | | |
| | 한자 | | | |
| 현 소 속 | | 기관 및 부서 : | 직위 : | |
| 기타사항 | | | | |

## □ 교육배경(학교명은 기재하지 않음)

| 구 분 | 내 용 | | |
|---|---|---|---|
| 학력 및 전공<br>(고교부터 기입) | 학교 구분 | 전 공 | 학 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논문, 저술, 賞 등 | | | |

□ 주요 경력(반드시 경력증명서로 증빙할 수 있는 사항만 기재)

| | 기 간 | 소 속 | 직 책 | 담당업무 |
|---|---|---|---|---|
| 경 력<br>(최신 경력부터 기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술 및 자격

| 구 분 | 내 용 | |
|---|---|---|
| 자격증 | 종 류 | 등록번호 |
| | | |
| | | |
| | | |
| 어학 | 종 류 | 점수 또는 수준 |
| | | |
| | | |
| | | |
| 기타 보유 자격 또는 기술 | | |

<별지 제3호 서식>

# 자 기 소 개 서

○ 응시한 직무분야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본인이 달성한 업적과 장점 등을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분량은 A4용지 2매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글자크기 12, 줄간격 160%, 용지 좌우 상하 여백은 20mm, 머리말, 꼬리말은 10mm로 작성

2022. . . 작 성 자 :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 직 무 수 행 계 획 서

○ 서론(관련 분야 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구체적 실천방안,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4~5매 정도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글자크기 12, 줄간격 160%, 용지 좌우 상하 여백은 20mm, 머리말, 꼬리말은 10mm로 작성

2022. . . 작 성 자 : (서명)

<별지 별지 제5호 서식>

#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정책기획조정관)

※ 기준구분에 관계없이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경우 응시 가능

| 구분 | 자격요건 | 해당요건 | 해당경력 |
|---|---|---|---|
| 학력 기준 | 《석사학위 이하인 자》<br>○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4년 이상인 자 | | |
| | 《박사학위 소지자》<br>○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 |
| 경력 기준 | 《공무원》<br>○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3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br>○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
| | 《민간인》<br>○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br>※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가능 | | |
| 자격증 기준 |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4년 이상인 자<br>※ 5급 경력경쟁 임용 자격증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인사규칙」〔별표7 2.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응시자격증 구분표 (교육행정 직렬) 참고 | | |
| 실적 요건 | ○ 관련분야에서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상기한 경력 요건에 상응하는 수상 경력이 있거나, 상기한 경력요건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br>※ 실적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 제출 필요 | | |
| ※ 관련분야 : 지방교육행정의 기획 · 조정 · 분석 · 평가, 교육정책개발 · 기획 · 평가, 교육복지 및 교육비특별회계 편성 · 운영 관련 분야 | | | |

※ 해당요건 :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자격요건에 표시(○)(중복 표시 가능)

※ 해당경력 : 해당되는 경력을 구체적으로 기재[예시 : △△시청 정책기획관(4급) 3년 근무]

응시자 성명 : (서명)

<별지 제6호 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2년 월 일

성명 : (서명)

인천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경력 조회에 관한 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자격증·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1)제공받는 자 | (2) 제공목적 | (3) 제공 항목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 공무원 채용 관리 |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 공무원 채용 관리 | 자격증, 경력사항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5.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인사혁신처
(2) 제공목적 :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3) 제공하는 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처분 있은 날로부터 5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2년 월 일

성 명 : (서명)

인천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 위 임 장

1. 위임자

| | | | |
|---|---|---|---|
| 성 명 | | 전화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2. 대리인

| | | | |
|---|---|---|---|
| 성 명 | | 전화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본인은 상기 대리인에게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개방형직위 임용과 관련한 응시원서 및 서류 제출을 위임합니다.

2022년 월 일

위임자 (서명)

인천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참고자료 1]

# 직무수행요건 명세서

## Ⅰ. 기본사항

| 1. 기관명 | 2. 직위명 | 3. 임용등급 | 4. 비 고 |
|---|---|---|---|
| 인천광역시교육청 | 정책기획조정관 | 지방부이사관 또는<br>일반임기제공무원(3급 상당) | |

| 5. 주요업무내용 | 비 중 |
|---|---|
| 1. 교육정책 기획 · 연구 · 개발 · 성과평가 관리 | 25% |
| 2.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 운영 관리 | 25% |
| 3. 교육행정의 조정 · 분석 · 평가 및 공약이행 관리 | 10% |
| 4. 교육재정 분석 · 확충 · 평가 관리 | 10% |
| 5. 지방교육자치 및 시 · 도교육감협의회 관련 업무 | 10% |
| 6.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및 초등 돌봄교실 관련 업무 | 10% |
| 7. 교육균형발전 계획 수립 및 운영 업무 | 5% |
| 8. 정책, 예산, 평가의 연계 조정 | 5% |

| 6. 관련분야 |
|---|
| 지방교육행정의 기획 · 조정 · 분석 · 평가, 교육정책개발 · 기획 · 평가, 교육복지 및 교육비특별회계 편성 · 운영 관련 분야 |

| 7. 필요지식 및 기술 |
|---|
| 지방교육행정의 기획 · 조정 · 분석 · 평가, 교육정책개발 · 기획 · 평가, 교육복지 및 교육비특별회계 편성 · 운영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 |

## Ⅱ. 직무수행요건

| 1. 임용자격 요건 | |
|---|---|
| 가. 필수요건 | ① 학력제한 ■ 무 □ 유<br>② 필수 자격증 ■ 무 □ 유<br>③ 기타 필수요건 ■ 무 □ 유 |
| 나. 경력요건 | 【 관련 학과 학력 기준 】<br>◦ 석사학위 이하인자<br>-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사람<br>◦ 박사학위 소지자<br>-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사람으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사람 |
| | 【 자격증 기준 】<br>◦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사람으로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사람<br>※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7 2.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의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교육행정 직렬) 참고 |
| | 【 경력 기준 】<br>◦ 공무원경력 기준<br>-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3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br>-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br>◦ 민간경력 기준<br>-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사람으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 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br>※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 예정 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가능 |
| | ※ 관련 분야<br>지방교육행정의 기획 · 조정 · 분석 · 평가, 교육정책개발 · 기획 · 평가, 교육복지 및 교육비특별회계 편성 · 운영 관련 분야 |

| | |
|---|---|
| 2. 능력요건 | ① 전문가적 능력<br>ⅰ)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 및 기술<br>ⅱ) 새로운 지식, 전략, 정보의 수집·분석 및 활용 능력<br>ⅲ) 종합적 판단력 및 정책결정 능력 |
| | ② 전략적 리더십<br>ⅰ) 비전제시 능력<br>ⅱ) 전략적 사고 및 전략수립 능력<br>ⅲ)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능력 |
| | ③ 변화관리능력<br>ⅰ)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과 예방조치 능력<br>ⅱ)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능력<br>ⅲ) 고객지향성 및 새로운 방식의 전파능력 |
| | ④ 조직관리 능력<br>ⅰ) 팀워크 형성 및 목표공유 능력<br>ⅱ) 업무개선 능력<br>ⅲ) 자원활용 능력 |
| | ⑤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br>ⅰ) 공감대 형성 능력<br>ⅱ)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br>ⅲ) 효과적인 협상 및 설득 능력 |
| 3. 특별요건 | ① 자격증: ■ 무, □ 유<br>② 외국어: 영어<br>※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3]<br>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참고<br>③ 정보화능력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등 공인기관의 자격<br>④ 기타 특별요건 : ■ 무, □ 유 |